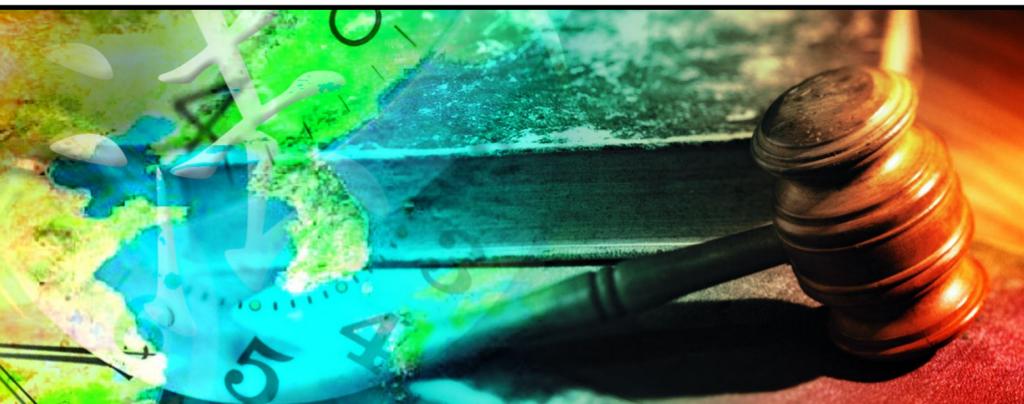


{ … 최근 북한의 법제정비는 경제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부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관련 법제의 수정·보충이 상황변화에 따라 비교적 빈번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 }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9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집필 : 김동한(법과 인권 연구소장)

통일교육원은 지난 2003년부터 통일·북한문제와 관련된
쟁점이나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하여 ‘주제가 있는 통일문
제 강좌’를 시리즈로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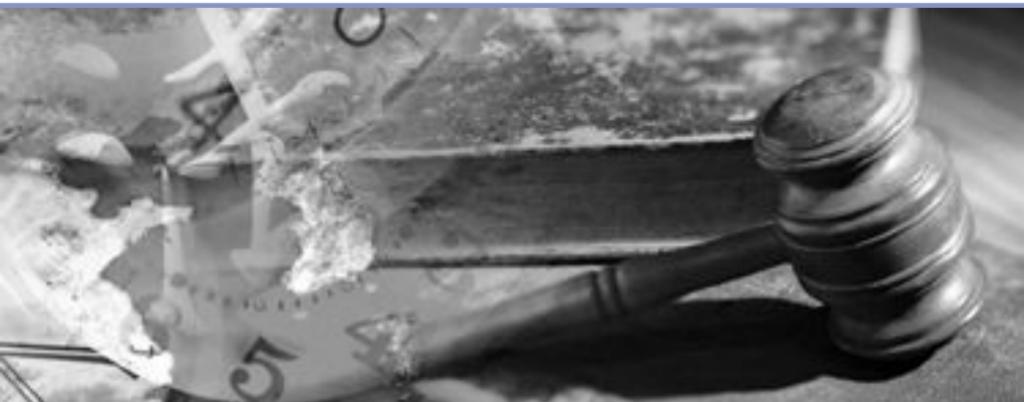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시리즈의 열 아홉번째로 발
간되는 이 소책자에서는 북한의 법인식과 법체계 및 분야
별·시기별 입법 동향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1990년
이후 북한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법제정비 동향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소책자가 최근 북한의 법제정비 상황 및 향후 법제정비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소책자는 통일교육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한 연구용역 결과물로, 반드시 통일부
의 공식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9**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05

I. 북한의 법인식과 법체계

1. 북한의 법인식
2. 북한의 법체계

11

II. 북한의 법규법과 법연실

1. 북한법의 특성과 사회주의 법무생활
2. 북한사회의 법규범과 현실 적합성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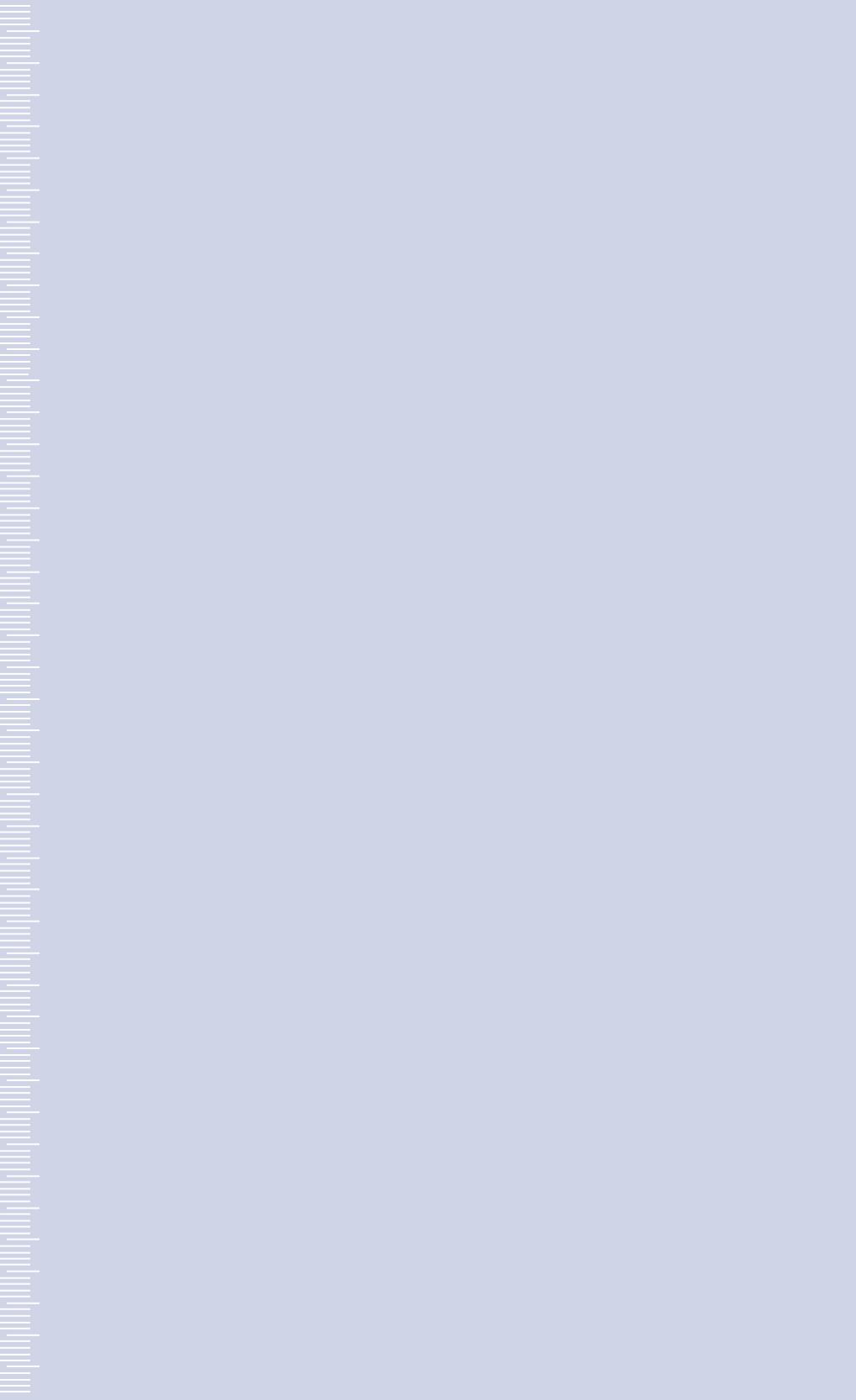
III. 북한의 입법동향

1. 분야별 입법동향
2. 시기별 입법동향
3. 최근 법제정비의 특징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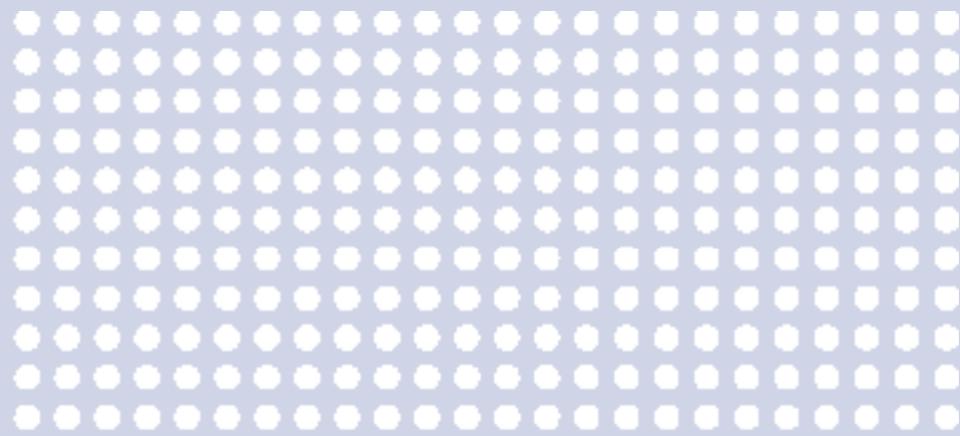
IV. 북한 법제정비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북한사회의 변화와 법제동향
2. 북한경제의 변화와 법제동향
3. 평가와 전망





I 북한의 범인식과 법체계





북한의 법인식과 법체계

1. 북한의 법인식

가. 정권수립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북한은 법제정의 뿌리를 정권 수립 이전인 1933년 항일 인민 정부의 당면과업을 구체화한 ‘정부정강’과 이 정강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지시·명령 등에 두고 있으나, 이는 현대적 의미의 법인식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정권 수립과 함께 이루어진 법제정은 인민민주의 독재 강화, 인민경제의 개선을 통한 물질문화 생활의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일제 악법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었다.

전쟁시기에는 전시체제 입법이 주를 이루고, 전쟁이후 복구 시기에는 전후경제 및 사회질서를 복구하기 위한 법제정이 이루어 지게 되며, 특히 전쟁으로 피폐된 인민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한 경제분야의 생산관계를 사회주의화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전쟁의 피해를 어느 정도 복구한 이후, 1980년대까지는 북한에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제정이 가속화되고, 특히 ‘사회주의헌법(1972년)’ 채택 이후 혁명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 제정이 이루어 짐으로써 법을 혁명 달성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초기 국가건설 시기부터 1980년대까지 북한의 법인식은 법을 혁명의 수단으로 보고, 법보다는 김일성의 교시가 사회통치의 우월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교시가 법을 대체하는 인식이 팽배하는 등 법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위법현상에 대한 대처도 예방차원의 준법교양에 중점을 두게 된다.

북한은 시대변화에 따라 법의 내용도 일부 조정하여 왔지만, 초기에 형성된 법에 대한 이와 같은 기본인식은 오늘날까지 그 맥을 유지하고 있다.

나. 1990년대 이후

1980년 말과 1990년대 초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변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 법제의 현실 적용력

을 높이는 방향으로 각종 법제의 제·개정이 이루어 지게 된다. 법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기존 북한의 정치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논거 및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는 이념적 색채가 강했던 법제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한편, 변화된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제를 새로이 제정하는 등 법에 대한 인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법제와 대외 경제개방 관련 법제의 제정 등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변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정비가 이루어 지게 된다.

이 시기에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대외 관계개선과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우리측의 대북경협 관련 법제가 많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제정비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정책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변화에 상응한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법을 바라보는 인식도 보다 현실적 시각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2. 북한의 법체계

북한의 법체계는 헌법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체계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이는 사회주의 법제에서는 성격상 유사한 법을 묶어 체계화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필요성도 없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 법제 특성상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법적 생활에서도 개인의 문제나 개인간의 문제가 그다지 중요성을 띠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제의 제·개정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북한도 법체계를 정리할 필요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기존의 북한 법령을 목적과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본 것으로 북한의 공식적 법체계는 아니다.

가. 현법(1998년 '김일성 헌법')

헌법은 전문, 정치(통치체제, 주권기관의 구성, 대외정책 등), 경제, 문화, 국방, 인민의 기본권리와 임무, 국가기관의 권한과 역할, 국가의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제로는 지방주권기관 구성법,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변호사법, 국적법 등이 있다.

나. 형사관련 법제

형사 관련 법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다. 민사·상사관련 법제

민사관련 법제로는 민법, 가족법, 민사소송법이, 상사관련 법

10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9

제로는 상사중재법, 사회주의상업법, 보험법 등이 있다.

라. 행정관련 법제

행정관련 법제는 도시경영법, 토지임대법, 사회주의재산관리법, 교육법 등이 있다.

마. 경제관련 법제

경제관련 법제는 인민경제계획법, 공증법, 재정법, 가격법, 무영법, 가공무역법, 농업법, 갑문법 등이 있다.

바. 지적재산권관련 법제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는 발명법과 저작권법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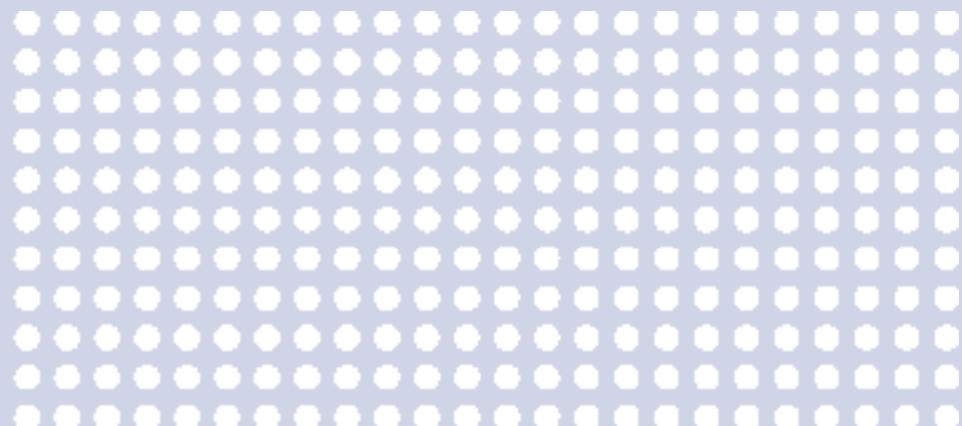
비. 외국인투자관련 법제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는 1992년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세금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투자은행법, 지하자원법, 대외경제계약법, 대외민사관계법, 대외경제중재법, 외화관리법,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신의주특별행정구역 기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 등이 있다.



III

북한의 법규법과 법현실





II

북한의 법규범과 법현실

1. 북한법의 특성과 사회주의 법무생활

가. 북한법의 특성

1) 사회주의법으로서의 북한법

사회주의 국가에서 법의 특징을 설명할 때 최우선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국가의지의 표현이 담긴 계급의지적 성격’이다. 다시 말하면, 법은 계급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유의지가 반영되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중심계급은 프롤레타리아이기 때문에 이 계급의 의지를 표현한 강제규범이 곧 법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법은 “일반적으로 강제적인 행위의 규율체계인 바, 그 규칙들은 국가에 의해 세워지고 보장되며,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고 그 국가의지를 나타내 준다”고 정의한다.¹⁾

1917년 이후 구 소련의 법제도는 이론과 법 그리고 정책 사이의 상호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레닌 시기에는 법소멸론이 득세를 하다가 스탈린 시기에는 법적 안정기로 분류될 만큼 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스탈린 사후에는 실용법학이 강세를 보였다.

사회주의법의 주요 원리로는 인민주권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 인민평등의 원리, 인민의 권리와 의무간 불가분의 연결원리, 합법성의 원리,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원리, 휴머니즘의 원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북한은 여기에 중앙집중의 원리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을 “지배계급에게 유리한 사회관계와 질서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공포하고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보장되는 행동준칙의 총체”라고 정의한다. 북한도 법을 ‘사회경제 제도의 반영이며 정치의 한 표현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은 “지배계급의 의사를 법화한 것”으로서 “모든 공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공통적인 행동준칙”이라는데 그 본질을 두고 있으며, 법은 정치의 표현양식이며 실현수단으로서 정치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한다.

1) 「맑스주의 국가와 법이론」, 송명주 옮김(서울:새날, 1990), 217쪽

따라서 노동계급을 지배계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에서 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력한 무기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노동계급화 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부르조아법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착취하며 자본주의 제도를 영구화하기 위한 자본가 계급의 독재수단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법을 초기 인민민주주의 시기에는 봉건잔재 청산작업의 주도적인 수단으로서 활용하였고, 사회주의 건설시기에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시기에는 “지난 기간 인민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정치적 승리와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성격과 임무, 활동 원칙들을 규정”하면서, 사회주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여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법도 계급성에 기초하고 있고 법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인정하는 사회주의법의 일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질에 있어 사회주의법의 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법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법이론과 다른 독창성이 강조되고 있다.

2) 주체사상과 북한의 법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법이론을 전범으로 강조하면서 법

이론사적으로 볼 때 맑스 - 레닌주의 법이론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의 법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즉, 맑스-레닌주의법이 인류법 사상 처음으로 확립한 ‘노동계급의 혁명적 법이론’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 단계 높이 발전한 법이론이 주체의 법이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의 법이론의 핵심은 ‘사람 ·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고, 체계화된 사람 · 근로인민대중 위주의 새로운 법이론’이라는 것이다.

주체의 법이론 입장에서 정의하는 법의 본질은 국가주권을 편 계급의사와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사회생활, 사회적 활동을 규제하는 의무적인 공동규범이자 준칙이며, 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주권을 가진 계급은 노동계급이고 노동계급의 의사와 이익에 맞는 공동규범과 준칙이 법이기 때문에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주의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주의법 이론이 노동계급의 법을 심화시켰다면 북한의 주체법이론은 사람 ·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는 단계까지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3) 우리식 사회주의와 북한법

북한이 강조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란 사회역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말한다. 또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 있는 사회주의라고 강조하면서 이것을 주체사상과 연계시켜 설명하고 있다.

즉, 노동계급과 주체사상 그리고 우리식 사회주의가 혼연일체의 개념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주장이 강조된 1991년이라는 시점은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와해라는 엄청난 격변의 시기였으며, 우리식 사회주의는 바로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논리로 개발된 것이다.

법에 대한 입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조직화된 사회이며, 사회의 높은 조직성은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법도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어야 하며,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여 집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 인민은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우리식 사회주의나 북한법에서 공통으로 중시하고 있는 주제어는 ‘근로인민대중’이다.

4) 사회주의 법무생활

북한은 1982년은 법률분야에서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 할데 대하여」라는 문건을 발표(1982.12.15)하게 된다.

북한은 이문건을 통해 사회주의 법무생활이란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 국가가 제정한 법규법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 것”이라 하며, “국가의 법질서에 따르는 근로인

민대중의 자각적인 규율생활이며,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공동행동을 실현해 나가는 국가적인 조직생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법무생활은 사회성원들이 법을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한 활동과 법질서에 따라 진행되는 사회생활 영역이며, 사람들의 행동이 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규범생활이라고 설명한다.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기본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국가의 법질서에 따르는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율생활이라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의 법이 사회에 강압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본질적 우월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기본 특징과 본질적 우월성은 자본주의 국가의 법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사회주의법의 인민적 성격과 복무적 사명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공동행동을 실현해 나가는 국가적인 조직생활이라는데 있다. 이는 법무생활이 법규범이 아닌 다른 사회적 규범에 따라 진행되는 규범생활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 법무생활은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

고 공동행동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사회주의법의 일반 의무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법무생활이 국가적 조직생활로 발전하는 것도 국가에 의하여 직접 조직되고 운영되며 국가권력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며 공동행동을 실현해 나가는 국가적인 조직생활로서의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특징은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하고 있으며, 결국, 사회주의 법무생활은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율생활이자 국가적인 조직생활이라는 것을 기본특징으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첫째, 법규법과 규정의 끊임없는 완성, 둘째, 혁명적 준법기풍의 확립, 셋째, 법무생활 지도체계의 수립 등을 들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기초로써 법규법과 규정을 들고 법무생활의 강화를 위해서는 법규법과 규정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규법과 규정을 잘 만들어야 사람들에게 사회주의 사회의 집단적 본성에 맞는 행위의 기준을 명백히 제시하여 줄 수 있으며, 사람들의 행동통일을 실현하고 집단의 규율과 질서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규법과 규정을 잘 만들어야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위법현상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며, 모든 부문과 모든 단위 그리고 모든 고리들이 맞물려 계획적으로 움직여 나간다. 그런데 사회주의 사회의 조직화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법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고 “이로부터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에 맞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고도의 치밀성을 가진 규정들을 완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1984).

한편 법규범과 규정의 제정의 중요성 못지 않게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법규범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혁명이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 것만큼, 법규범과 규정들도 그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에 대한 인식도 여기에 맞추어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법은 사회경제 제도의 반영이며 정치의 한 표현형식이므로, 사회경제 제도를 정확히 반영한 법만이 혁명과 건설에 잘 이바지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실효성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혁명단계에서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 맞게 이미 실시되고 있는 법규범과 규정들을 끊임없이 완성해 나가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법의 복무적 역할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에 정연한 법질서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에 혁명

20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9

적 준법기풍을 세울 때 모든 사람들이 법질서에 따라 규율과 절도있는 생활을 하게 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 제도가 바로 서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이룩된다고 본다.

나아가 혁명적 준법기풍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올바르고 정확한 준법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법생활화 운동의 전국민적 전개를 독려하면서, 혁명적 준법기풍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의 법적 통제는 “법준수 집행정형을 늘 요해장악하고 위법현상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무생활 지도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국가의 통일적인 법질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하자면 강력한 국가기구의 통일적인 지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기구로서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 조직은 법무생활 지도기관으로서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의 법무생활을 조직지도하는 비상설기관이다. 주요 임무는 국가경제기관 지도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는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는 이유는 법을 전체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건설을 추동

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강화로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는 과정을 강화하여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며, 밖으로부터 부르조아 사상, 수정주의 사상이 들어 오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는 이유는 사회주의 건설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라고 하겠다. 이른바 법질서의 문란을 염두에 두고 국내외적인 불순한 영향으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고 주체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헌법에 보충된 법관련 조항으로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라는 규정이 있다(제18조3항).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의 법제사업 강화의 기원은 1982년의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문건에 있다.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이 문건에서는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기초로서 법규범과 규정을 들면서, 법무생활의 강화를 위해서는 법규범과 규정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규범과 규정을 잘 만들어야 사람들에게 사회주의 사회의 집단적 본성에 맞는 행위의 기준을 명백히 제시하여 줄 수 있으며, 사람들의 행동통일을 실현하고 집단의 규율과 질서를 보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규범과 규정을 잘 만들어야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위법현상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법제사업과 법무생활 강화는 1982년의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문건을 1992년 수정 헌법에서 헌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북한사회의 법규범과 현실 적합성

법이 시대의 반영이라는 것은 체제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북한도 사회주의 체제라는 큰 틀은 견지하면서도 변화의 조짐을 법령의 수정·보충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 북한 인민들의 실생활을 북한사회의 법규범이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사법제에서 ‘온고지신’의 정신을 담고 있다든지, 형사법제에서 체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 아닌 일반범죄의 경우 형벌을 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과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모습은 체제를 불문하고 어떠한 공동체든 공동체내에서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이른바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사회도 속도의 완급은 있을지라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려는 변화를 법제정비라는 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법무생활이 법을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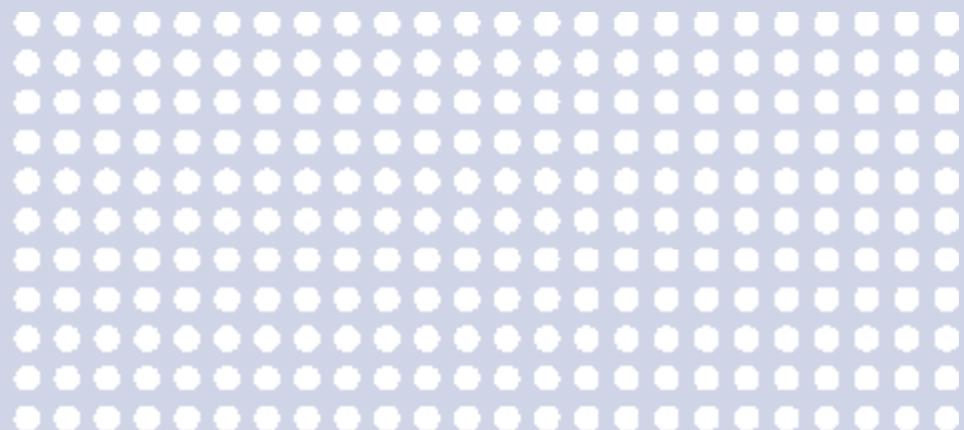
활동이라고 보고 법무생활은 법질서에 따라 진행되는 사회생활 영역이며 사람들의 행동이 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규범생활이라는 원칙은 유지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근로인 민대중의 자작적인 규율생활이자 국가적인 조직생활이라는 것을 기본특징으로 강조하고 있다. 결국 사회주의 법무생활 강화는 법규범의 현실 적합성 차원에서 보면 준법 행동양식이 된다. 결국, 국가가 제정한 법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법무’는 우리의 ‘법치’와는 개념상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24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9



III

북한의 입법동향





III

북한의 입법동향

1. 분야별 입법동향

가. 헌법의 동향

북한이 정권 수립시기의 헌법인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폐기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알리는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공포한 것은 1972년 12월 27일이며,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 2차례의 수정 · 보충 과정을 거치게 된다.

1) 1992년 사회주의헌법

(가) 구성

1992년 헌법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1972년 헌법을 수정 · 보충하였으며, 총7장 171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배경

1992년 헌법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의 유일 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과 이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식 사회주의’의 표방은 사회주의 체제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주체사상을 재강조한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권의 퇴조 이후 국제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 정책의 이념과 원칙을 수정하여 대외 경제개방 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후계체제 기반구축을 위한 권력구조의 부분적인 다원화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개정내용 및 특징

체계상 가장 큰 변화는 제4장 ‘국방’의 장을 신설하고, 국가기구를 제6장 국가기구에 통괄하여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관에서 독립하여 격상시켰다는 점이다. 한편 ‘지방행정위원회’를 ‘지방행정경제위원회’로 개칭하는 등 국가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조정하였다.

정치의 장에서는 우선 사상·이념적으로 북한의 독자성을 강조한 방향으로 대폭 수정하였다. 즉, 맹스-레닌주의 이념을 포기하고 주체사상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제3조). 주권의 소재에서는 ‘병사’를 삭제하고 ‘모든 근로인민’을 추가하고(제4조), 사회주의 발전단계에 대해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시’에서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강화'로 개정하였다(제12조).

또한 법관련 조항으로 특징적인 것은 국가에게 '사회주의 법률제도 완비'와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강화'를 책무로 규정한 조항의 신설이다(제18조 제3항). 한편, 천리마 운동 대신 김정일의 지도노선인 '3대혁명 블은기 쟁취운동'을 반영하였다(제14조). 대외기본정책도 수정하여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자주·평화·친선'의 3대원칙으로 수정하고(제17조),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구체화하여 외국과의 합영·합작 규정을 신설하였다(제37조). 남북관계에서 민감한 부분인 「전국적 범위」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도 눈에 띄이는 변화이다(제9조).

경제의 장과 문화의 장에서는 '기술혁명'과 '인민의 복지향상'을 강조하였고, 환경보호규정을 신설하였으며(제57조), 국방의 장에서는 4대 군사노선을 천명하였고(제60조), 기본권 분야에서의 특징은 '반종교 선전의 자유' 문구를 삭제하였다(제68조).

국가권력 구조에서는 주석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신 최고인민회의를 강화하였다. 또한 국방위원회의 분리·승격과 국가기관의 임기를 5년으로 통일한 것 등이 특징적이며, 국가조항을 신설하여〈애국가〉를 명문화하였다.

전체적으로 1992년 헌법은 1972년에서 1992년 이라는 20년의 시간적 틀속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한,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김정일 헌법의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2)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가) 구성

1998년 사회주의헌법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총 7장 16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주의헌법의 2차 수정 · 보충이며 실질적인 세번째 헌법이다. 공식적으로 김정일 시대를 알리는 헌법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김일성 헌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나) 배경

1998년 헌법은 정치적으로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 권력승계 절차의 공식적인 마무리라는 점에서 실질적 권리행사(김정일)와 형식적 국가원수(김일성)의 역할분담을 규정함으로써, 김일성 생전의 권력구조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경제회생을 위한 실리와 효율에 입각한 현실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해 나갈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다) 개정내용

〈서문 신설〉

역대 헌법에서 볼수 없었던 서문을 신설하였다. 김일성을 찬양하는 문장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바 ‘유훈통치’를 헌법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총강 부분〉

□정치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혁명적인 정권’에서 ‘혁명적인 국가’로 수정하였으며, 제8조에 ‘모든 근로인민’을 보충하였다.

□경제

‘협동단체’를 ‘사회협동단체’로 확대하였으며(제20조), ‘교통’을 ‘철도, 항공’으로 구체화 하였고(제21조), ‘협동경리’를 ‘해당단체’로 수정하였고, 협동단체 소유항목에서 ‘부림짐승’을 삭제하였으며(제22조), ‘농기구, 고기배’를 ‘농기계, 배’로 수정하였다. 개인소유의 주체를 ‘근로자들’에서 ‘공민들’로 수정하였으며(제24조),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자주적 발전’을 ‘융성번영’으로 바꿨으며,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였다(제33조). 대외무역은 ‘국가가하거나 국가의 감독밑에서 한다’를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로 수정하였다(제36조).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 운영’도 추가하였다.(제37조)

□문화

‘문화 · 기술수준’을 ‘문화 · 예술수준’으로 수정하였으며(제40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를 삭제하였

고(제51조), ‘예방의학적 방침’을 ‘예방의학적 제도’ 등으로 문장을 다듬었다.(제55~56조)

□ 국방

4대 군사노선의 순서를 약간 바꿨다.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의 순서를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의 순서로 수정함으로써, 군을 강조했고 볼 수 있다.(제60조)

〈기본권 부분〉

□ 거주 여행의 자유 신설

거주 여행의 자유를 신설하여 기본권 관련 조항에서 상징적인 변화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제75조)

□ 형법과의 중복 부분 삭제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구헌법 제82조)와 ‘조직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제86조)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는 북한형법(제47조)과의 중복을 피하겠다는 의도이거나 국제인권단체의 지적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으며, 나아가 대외관계의 전반적 변화의 하나일 수도 있다.

〈국가기구 부분〉

□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신설하여 이전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상임위원회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권한 중 회의집행권과 대외관계에서 최고인민회의 대표권을 삭제하고 회의 사회권만 인정하였다(제94조). 또한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를 조정하였는 바, 구헌법상에는 법제, 예산, 외교, 통일정책위원회를 두었으나 개정헌법에서는 법제, 예산위원회만 규정하고 있다(제98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수정하여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전제 문구를 삽입하였다(제99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 주권기관이다’(제106조)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약간 명의 명예 부위원장제를 신설(제108조)하였으며, 또한 임무와 권한도 대폭 강화되었다(제110조). 즉, 상임위원장이 대외적으로 ‘국가대표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상임위원회의 주요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 심의 · 승인,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 해석, 국가기관들의 법 준수 집행 · 감독 및 대책 수립, 최고인민회의 부문 위원회와의 사업수행, 내각 · 위원회 및 성의 창설 · 폐지, 휴회중 부총리 · 위원장 · 상 등의 임명 · 해임,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 소환결정의 발표, 훈장과 메달 · 명예칭호 수여, 대사권과 특사권 행사 등의 권한이 그것이다.

□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전반적인 국방관리기관’(제100조)과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를 추가(제102조)하였고, ‘국방부분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를 신설(제103조)하였다.

□ 내각

정무원을 폐지하고 내각을 신설하였다. 내각은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제117조)이라고 성격을 규정하였으며, 임무와 권한으로는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을 한다(제119조)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대표권을 신설(제120조)하여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였다.

□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제133조)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에서 ‘사회한다’로 수정(제137조)하였다.

□ 지방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는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를 추가(제139조)하였으며, 서기장을 사무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제140조). 임무와 권한으로는 지방의 인민경제 발전계획 작성, 실행대책 수립, 지방예산 편성, 집행대책 수립, 해당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 위한 대책수립, 해당기관에서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 수행(제 141조) 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 와 상무회의를 가진다(제142조)라는 조항과 비상설부분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145조)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기타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지방행정 경제위원회 등의 기구는 폐지하였다.

(라) 1998년 사회주의헌법의 특징

□ 김일성헌법 명문화 - 서문신설

세계 각국의 헌법은 전문(前文)을 두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우리헌법은 제헌헌법부터 전문을 계속 두고 있으나 북한헌법은 제헌헌법이래 전문이 없었다. 그런데 1998년 개정 헌법에는 이례적으로 서문을 두고 있으나 이 서문은 김일성 개인의 사상과 철학, 업적등을 찬양하는 것이 전부이다.

결국 서문 마지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다'에서 규정한 것처럼 김일성 헌법임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일의 권력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경제부문의 점진적 변화

'72년헌법에 비해 '92년헌법은 많은 변화를 보인 반면, '98년헌법에서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약간의 변화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협동단체' 개념의 도입이라든지 '독립채산제실시'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 인정' '개인소유 확대' 등이 그것이다.

□ 거주·여행의 자유 신설

인간의 기본권중 하나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신설한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상징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북한사회의 현 상황을 어느정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국가기구의 대대적 개편

① 주석제폐지

주석, 수령은 오직 한사람 김일성 뿐임을 헌법상 기구의 폐지에서 재삼 확인할 수 있다.

② '48년 헌법상 국가기구와의 유사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각 성의 신설은 그 명칭에

서 '48년 헌법과의 유사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대외적 대표권과 내각총리의 정부 대표권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③ 내각 권한 강화 및 지방기구의 역할 조정

정무원을 내각으로 바꾸고 중앙인민위원회 및 지방행정경제위원회를 폐지하면서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주석, 중앙인민위원회를 대신하여 그 권한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였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 권한도 지방인민위원회로 이관하였다.

④ 검찰기능 강화

재판소와 검찰소 부분에서 순서를 바꿔 검찰소 규정을 앞으로 배치한 것은 검찰기능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⑤ 김정일 위상 강화

헌법적으로는 김정일은 헌법상 기구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일 뿐이다. 그러나 당우위 체제인 북한에서 김정일은 당 총비서인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98년 헌법은 형식상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총리 3인에게 권력이 분립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방위원장이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 최고의 직책'을 가짐으로써 김정일은 국방위원회를 통해 군 뿐만아니라 국정전반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었다.

〈북한헌법의 편제 비교〉

48년 헌법 (1948. 9. 8.)	72년 헌법 (1972. 12. 28.)	92년 헌법 (1992. 4. 9.)	98년 헌법 (1998. 9. 5.)
제1장 근본원칙	제1장 정치	제1장 정치	서문
제2장 국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2장 경제	제2장 경제	제1장 정치
제3장 최고주권기관	제3장 문화	제3장 문화	제2장 경제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4장 국민의 기본권 리와 의무	제4장 국방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 와 의무	제3장 문화 제4장 국방
제2절 최고인민회의	제5장 최고인민회의	제6장 국기기구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 와 의무
상임위원회	제6장 주석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6장 국기기구
제4장 국가집행기관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제2절 주석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1절 내각	제8장 정무원	제3절 국방위원회	제2절 국방위원회
제2절 성	제9장 지방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제4절 중앙인민위원회	제3절 최고인민회의
제5장 지방주권기관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5절 정무원	상임위원회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11장 국장, 국기 및 수도	제6절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제4절 내각
제7장 국가예산		제7절 지방행정경제 위원회	제5절 지방인민회의
제8장 민족보위		제8절 재판소와 검찰소	제6절 지방인민위원회
제9장 국장, 국기 및 수부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7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0장 헌법수정의 절차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3) 사회주의헌법 변천의 성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헌법 내용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2년 헌법은 김정일 세습체제를 의식하여 이른 바 우리식 사회주의 헌법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1998년 헌법은 김일성 헌법임을 명문화하여 북한 고유의 독창적 헌법인 점을 내세우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독자적 반응을 보이는 북

한의 입장은 민족주체성을 강조하여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구소련이나 중국과 같이 북한에 영향을 주었던 국가의 헌법들과 비교하여 보면 1948년 헌법은 구소련의 스탈린헌법을 모델로 하였고, 1972년 헌법은 권력구조 부분이 중국헌법과 유사하다. 1992년 헌법의 대외경제개방 조항은 중국헌법의 관련조항과 유사하며, 1998년 헌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경제조항의 변화인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대외무역을 강화하고 특수경제지대를 규정함으로써, 중국처럼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92년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강화하였으나, 1998년 헌법은 아예 주석제를 폐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내각총리가 각각 대외·내내의 대표성을 갖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시켰다.

결국 북한은 김정일체제 구축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헌법을 개정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948년 헌법 제정시기엔 김일성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였기에 내각수상에 머물렀으나, 그 이후 1972년 헌법에서 주석 1인 독재체제를 확고히 하였으며, 1992년 헌법은 김정일에게 권력이양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국방위원회를 강화하였고, 1998년 헌법은 김일성 헌법이라는 포장속에서 김정일이 실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나. 형법의 동향

북한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의 하나가 바로 형법상 ‘사회주의 공동생활 질서를 침해한 범죄’의 변화이다. ‘사회주의 공동생활 질서를 침해한 범죄’의 범주에 드는 범죄로는 1999년 형법까지는 ‘불량자행위죄’(제131조), ‘미성인범죄부추진죄’(제132조), ‘직권참용죄’(제263조), ‘도박죄’(제134조), ‘습득물횡령죄’(제135조), ‘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제136조), ‘학대괄시죄’(제137조), ‘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제138조), ‘묘파손죄’(제139조), ‘약취물건거래죄’(제140조) 등 10개 범죄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 형법에서는 대폭 증가된 20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위의 10개 범죄이외에도 ‘폐싸움죄’(제259조), ‘매음죄’(제261조), ‘음탕행위죄’(제262조), ‘거짓행세죄’(제264조), ‘칭호참용죄’(제265조), ‘미신행위죄’(제267조), ‘미신행위조장죄’(제268조), ‘실력행사죄’(제269조), ‘비법혼인죄’(제270조), ‘사례금, 이득금을 바치지 않은 죄’(274조) 등 10개 범죄가 추가되었다.

이는 북한사회가 도덕적으로 문란해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매음죄’와 ‘음탕행위죄’의 구성요건이 ‘매음행위를 여러번 한자’와 ‘여러 남녀가 모여 음탕한 행위를 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매음행위’와 ‘음탕행위’가 실재하고, 그러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중하게 처벌하는 것에서

북한사회의 문란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문화’에도 심각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바,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의 유형도 1999년 형법까지는 ‘역사 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파손죄’(제97조), ‘저작, 발명, 창의고안 묵살죄’(제98조), ‘어린이보호관리질서위반죄’(제99조), ‘의료사고죄’(제100조), ‘비법의료죄’(제101조), ‘비아편재 배, 마약제조죄’(제102조) 등 6개 조항에 불과했으나 2004년 형법에서는 26개조항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즉,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제193조),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제194조), ‘적대방송청취, 인쇄물, 유인물수집, 보관, 유포죄’(제195조), ‘역사유적도굴죄’(제197조), ‘역사유물 밀수, 밀매죄’(제198조), ‘저작, 발명, 창의고안 도용죄’(제200조), ‘컴퓨터망침입죄’(제201조), ‘정보파손죄’(제202조), ‘허위정보입력류포죄’(제203조), ‘교육강령, 과정안을 무책임하게 집행한 죄’(제204조), ‘후비양성사업을 부당하게 한 죄’(제205조), ‘체육선수선발을 부당하게 한 죄’(제206조), ‘치료거부죄’(제208조), ‘불량의약품, 의료기구생산죄’(제210조), ‘위생방역사업태만죄’(제212조), ‘국경검역을 무책임하게 한 죄’(제213조),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의 취득, 매매, 리용죄’(제214조), ‘가짜의약품, 식료품제조, 판매죄’(제215조), ‘비법마약사용죄’(제217조), ‘마약밀수, 밀매죄’(제218조) 등이다.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

림, 사진, 도서, 녹화물과 유연성자기원판, 씨디-롬 같은 기억매체'의 반입과 유포와 보고 듣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도덕성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해 온 북한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나 예견되는 상황까지 왔다면 이것은 '변화'이다. 정보통신 분야의 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다.

다. 민법과 가족법의 동향

민법과 가족법은 1990년에 제정된 이후 각각 두 차례 수정보충되었다.²⁾

민법에서 주목할 법제정비는 실종기간(제22조)과 국가소유재산의 범위조정(제45조) 조항이다. 실종기간은 마지막 소식이 있은 때부터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되었으며, 소재 불명자로 인증된 후 1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 소식이 있은 때부터 3년을 각각 2년, 5년으로 연장하였다.

국가소유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먼저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4개항을 3개항으로 조정하였다. 즉, 1990년 민법에서 규정한 제45조 2항, 3항을 통합하여 1개조

2) 민법은 1990.9.5 채택되어, 1993.9.23 수정, 1999.3.24 수정보충 되었다. 그리고 가족법은 1990.10.24 채택, 1993.9.23 수정보충, 2004.12.7 수정보충 되었다.

항으로 정비를 하였다.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에서 ‘2. 중공업, 경공업, 수산업, 림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부문의 중요공장, 기업소와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와 같은 농촌경리부문에 복무하는 기업소, 수매량정, 도시경영, 중요상업 및 출판인쇄기업소 3.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방송기관’을 ‘2.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으로 조정하였다.

따라서 중요 공장과 기업소는 ‘중공업, 경공업, 수산업, 임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부문의’라는 중요공장에 대한 제한 문항과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같은 농촌경리 부문에 복무하는’이라는 기업소에 대한 제한 문항이 삭제되어 오히려 모든 중요공장과 기업소로 확대되었으며, ‘체신, 방송기관’에서 ‘방송기관’이 삭제되어 오히려 방송기관을 국가이외의 단위에서도 소유가 가능한 것처럼 되었다. 민법의 정비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헌법에서 처럼 ‘협동단체’를 ‘사회협동단체’로 수정하였다는 점이다.

가족법에서 1차 수정보충 때는 제22조에서 ‘3살 미만의 자녀’를 ‘3살 아래의 자녀’로 제27조에서 ‘결결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를 ‘지덕체를 갖춘 자주적 인간으로’로, ‘제6장 별칙’을 ‘제6장 제재’로, 제54조에서 ‘해당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로, ‘법적 제재의 적용은’을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의 추궁은’으로 문장을 다듬었으며, 제23조에서는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

자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2차 수정보충 때는 제20조 3항에 "이혼판결은 확정된 때부터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라는 1개항이 신설되었다. 북한에서 이혼은 법정이혼만 인정하는데 이혼을 승인하는 판결이 곧 이혼의 성립을 선언하거나 이혼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당사자들에게 이혼을 허용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의 성립시점은 재판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 당사자들이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비로소 성립된다는 해석이다.³⁾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이혼판결 효력기간을 신설한 것은 이혼판결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러한 이유로 다시 결혼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전에 내린 이혼판결에 근거하여 이혼등록을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혼판결을 받은 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의 집행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다.⁴⁾⁵⁾

3) 리송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제도』, (평양:사회과학출판사, 2004), 100쪽.

4) 리송녀, 위의 책, 101쪽.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제도』의 간행일자가 2004.6.20이고, 가족법 제2차 수정보충이 2004.12.7인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제도』에서 해설하면서 "우리의 법은 리혼판결을 받은 자가 특별한 리유없이 3개월이 지나도록 리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의 집행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법률을 제정하여 실행단계이면서 절차상으로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그 후에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라. 소송법의 동향

1) 민사소송법의 동향

민사소송법은 1976.1.10 채택된 후 1994.5.25, 2002.10.24, 2004.12.7, 2005.10.25 등 모두 4회 수정보충되었다.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활동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제1조).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으로는 재판소의 책임성과 소송당사자의 적극성 결합원칙, 민사소송 당사자의 권리와 소송행위 조건의 보장원칙,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원칙, 민사소송 활동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의 보장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5조).

구성면에서는 1차 수정보충 때(1994.5.25) 장의 배치에서 제3장 재판관할을 제5장으로 배치하고 177개조항을 182개조항으로 조항수가 늘어나면서 좀 더 정치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내용면에서 특징은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의 전면개정이다. 이는 '72년 사회주의 헌법에 입각하여 '76년 민사소송법이 제정되었고, '92년 사회주의 헌법의 개정에 맞춰 '94년 개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76년 민사소송법의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의 주요내용>

- 제1조 : 조선노동당의 사법정책에 따라 재판소들이 민사사건을 심리해결하는 활동원칙, 방법, 절차를 규정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
- 제2조 :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 계승
- 제3조 :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유일한 지도적 지침
- 제4조 : 민사소송법의 과업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여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법위반자들, 불건전한 요소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과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함으로써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에 이바지
- 제5조 : 재판소는 민사소송활동에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 따라 정치 사업을 앞세우며 군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
- 제6조 : 재판은 구체적, 과학적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진행
- 제7조 : 당사자들은 소송상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상 권리와 책임을 정당하게 행사하며 법적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94년 개정 민사소송법의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의 주요내용>

- 제1조 : 민사소송활동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 제2조 : 국가는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 당사자의 적극성을 옳게 결합하는 원

46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9

칙에서 민사소송활동 진행

제3조 : 국가는 민사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 권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조건

을 평등하게 보장

제4조 :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진행

제5조 :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

제6조 :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 사이에 제기되는 민사상 권

리, 이익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적용. 공화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투자

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적용

이처럼 '76년 민사소송법에 강하게 반영되었던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94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완전히 삭제하고 민사소송법 본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6조 제2항에서 “공화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법에서와 같이 경제개혁 · 개방과 관련하여 신설된 조항이다.

2차 수정보충 때(2002.10.24)는 조금 더 세밀하게 문장과 내용이 다듬어졌다. 재판관할 문제에 있어서 ‘민사사건의 재판은 인민재판소에서 한다’(제54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특별재판소,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민사사건을 재판한다’고 수정하였으며, 나아가 도(직할시)재판소의 관할범위를 ‘도급기관, 기업소와 외국법인, 외국인이 당사자로 나서는 민사사건’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소송의 제기와 재판준비에 있어서 재판소가 소송장 접수나 소송을 거부할 경우 이의제기 기한을 이전의 5일안에서

10일안으로 확대하였으며(제72조), 판사는 원고가 낸 소송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는데 그 시한을 이전의 5일안에서 2일안으로 단축시켰고, 피고에게 답변서를 이전에 5일안에 내도록 했던 것을 3일안에 내도록 단축시켰다(제75조). 이는 신속한 소송진행의 의지가 담겨있다.

그리고 ‘판정으로 사건을 기각할 경우’에 두가지를 더 추가하였다. 즉, “피고가 임신중에 있거나 1살에 이르지 못한 어린 이를 키우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이혼사건인 경우, 이혼과 관련한 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확정된 때부터 1년이 못되는 이혼사건인 경우”(제86조)이다. 또한, 재판준비 단계에서 사건기각 판정에 대한 상소의 경우 ‘판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라는 문구를 보충하였다.

3차 수정보충 때(2004.12.7)는 “증인이 재판소의 부름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를 “증인이 재판소의 부름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하는 판정을 할수있다. 구인판정의 집행은 인민보안기관이 한다”(제45조)로 증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수정보충되었다. 또한 1심재판소는 상소장 항의서를 한급 높은 재판소에 보낼 것에 대해 ‘5일안으로’라고 기한을 명시하고 있다(제142조).

이것은 소송진행의 신속성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보충된 것이다. 그밖에 보충된 조항으로는 제76조 2항(증거수집과 관련한 증인진술을 받을 경우 판사는 증인에게 거짓말을 하면 법적책

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7조 3항(구인판정의 집행은 제45조 3항에 따른다), 제131조 3호(소송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1호에 관계없이 원고 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수 있다), 제175조 3항(판결, 판정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그에 반항하는 경우 집행원은 인민보안기관에 판결, 판정집행의 보장을 의뢰할수 있다) 등이 있다. 이 조항들은 소송의 정당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추가된 조항들이다.

4차 수정보충 때(2005.10.25)는 제6조 2항 “공화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개인들사이 또는 공화국재판소에 제기된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개인들사이의 분쟁해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제89조와 제177조에서 ‘검사에게 해당 사건기록을 보내며’ 와 ‘3일전에 검사에게 알리고’라는 문구를 각각 보충한 것은 민사소송에서도 검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 형사소송법의 동향

형사소송법은 1992.1.15일 채택된 이래 전면적인 수정보충은 2004.5.6에 있었다.⁶⁾ 조항수도 305개조항에서 439개조항으로 확대되었다.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서 형사소송법의 사명(제1조)이 실질적으로 바뀐 점이다. 즉, 이전에는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 처리하는데 이바지 한다”로 이념적인 문구에서 실용적인 문구로 바뀌었다.

2005년 수정보충 조항을 살펴보면, 우선 형사소송 관계자에 ‘피소자’를 포함시켰고(제9조 1항), 정신병, 중병에 대한 감정을 ‘법의감정의사 또는 인민병원의사협의회’가 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해당 기관’이 하는 것으로 수정했다(제43조 2항). 또한 ‘예심과정에서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을 경우’에서 ‘범죄자’를 삭제하였다(제157조 2항).

그리고 ‘예산이 없어 담보처분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서 ‘예산이 없어 담보처분을 할 수 없을 경우’(제252조)로 문구 수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그밖에 구류중의 피소자 석방조건에서 ‘형벌을 면제하거나’를 삭제하여(제348조 1항) 논리적 모순을 해소하였으며, 재심의 임무에서 ‘새로운 범죄에 기초하

6) 형사소송법은 1992.1.15일 채택된 이래 4회(1995.4.12, 1996.1.19, 1997.9.17, 1999.9.2)에 걸쳐 소폭의 수정보충이 있었다는 남측의 자료(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2003.10)』, 135쪽)에 대해, 북측은 대폭 수정보충된 2004.5.6의 것과 그 이후 2005.7.26 수정보충만을 [대중용 법전과 대중용 법전 종보판]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50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9

여'를 '새로운 사실에 기초하여'로 바로 잡았으며(제403조), 같은 맥락에서 재심제기의 경우에도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로서'를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로서'로 바로 잡았다(제409조).

〈1992년 형사소송법과 2004년 형사소송법의 구성 비교〉

1992년 형사소송법	2004년 형사소송법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2장 일반규정	제2장 일반규정 제1절 형사소송관계자 제2절 형사소송에 관여할 수 없는자 제3절 형사사건의 취급시작 제4절 형사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5절 형사소송의 중지 제6절 형사사건의 기각 제7절 사회적교양처분 제8절 순해보상 제9절 형사소송문건
제3장 증거	제10절 형사소송기간과 문건송달, 소송비용
제4장 수사와 예심	제3장 증거 제4장 변호 제5장 관할 제6장 수사 제7장 예심 제1절 예심의 임무와 기간 제2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제1절 수사 제2절 예심의 임무와 관할 제3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제4절 피심자심문 제5절 구속처분 제6절 검증과 검진	

제7절 감정	제3절 피심자의 심문
제8절 수색과 입수	제4절 체포와 구속처분
제9절 증인심문	제5절 검증
제10절 재산담보처분	제6절 감정
제11절 예심과 종결	제7절 수색과 입수
제5장 검사의 사건처리(기소)	제8장 기소
제6장 변호	제9장 제1심재판
제7장 재판	제1절 재판의 임무와 재판소구성
제1절 재판의 임무와 관할	제2절 재판준비
제2절 재판준비	제3절 재판심리
제3절 재판심리	제4절 기소의 추가와 변경
제4절 기소의 추가와 변경	제5절 판결
제5절 판결	제10장 제2심재판
제8장 제2심재판	제11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제9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제1절 비상상소심
제1절 비상상소심	제2절 재심
제2절 재심	제12장 판결, 판정의 집행
제10장 판결, 판정의 집행	

마. 경제법의 동향

북한 법제정비의 핵심을 이루는 분야가 경제관련 분야이다. 경제관리개선조치(2007.7.1) 이후에는 더욱 더 법제정비에 심

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뿐만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경제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1) 국내경제 관련 법제의 동향

〈국내경제 관련 정비 법령 형황〉

민법(1990.9.5), 상업법(1992.4.9), 도시경영법(1992.4.9), 삼림법(1992.12.12), 지하자원법(1993.4.8), 민법개정(1993.9.23), 건설법(1993.12), 계량법(1994.2), 민사소송법 개정(1994.5.25), 수산법(1995.2), 중재법(1995.3), 보험법(1995.4.6), 재정법(1995.8.30), 사회주의재산관리법(1996.3.21), 전력법(1996.1), 가격법(1997.3.1), 물자원법(1997.7.16), 품질감독법(1997.7), 규격법(1997.8), 도로법(1997.10), 바다오염방지법(1997.11), 의료법(1998.1.21), 수의방역법(1998.1), 에너지관리법(1998.5), 발명법(1998.6.11), 공중위생법(1998.11.7), 유용동물보호법(1999.1.21), 농업법(1999.1.29), 양어법(1999.3.10), 인민경제계획법(1999.4.7)

대표적으로 인민경제계획법과 농업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민경제계획법의 동향

이 법은 1999년 4월 9일 채택되고, 2001년 5월 17일 수정보충되었으며, 모두 6개장 48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인민경제계획법의 기본, 제2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제3장 인민경제계획의 비준과 시달, 제4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 제5장 인민

경제계획의 실행총화, 제6장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인민경제계획을 ‘경제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국가의 지령’으로 정의하고 있다(제1조). 그리고 북한의 경제를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계획경제’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인민경제계획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관리를 실현하기위한 기본수단’으로 본다(제4조).

인민경제계획사업의 원칙으로는 ‘인민경제계획을 생산자대중과 토의하여 세우고 작성된 계획을 생산자대중의 것으로 만드는것’을 제시하고 있다(제5조). 또한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인민경제계획을 강조한다(제6조).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체계와 방법으로 인민경제계획 사업의 현대화, 과학화를 국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8조). 이러한 인민경제계획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능력있는 계획일군을 양성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제9조).

이 법을 제정한 것은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쳐 오면서 북한경제가 계획·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방증한 셈이다. 인민경제를 통일적으로 국가가 장악하고 유일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제3조) 법제화가 필요했다는 데서도 입증이 된다.

(나) 농업법의 동향

이 법은 1999년 1월 29일 채택되고, 2002.6.13 1차 수정보충되었다. 이 법은 모두 6개장(제1장 농업법의 기본, 제2장 농업생산, 제3장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제4장 농업자원의 보호, 제5장 농업생산물의 관리, 제6장 농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8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법이 채택된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98년 헌법개정시 제28조에서 농업의 공업화에 ‘현대화’를 추가하여 시대에 적합한 농업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199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농업생산은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이다. 올해 우리는 농사에 전국가적 힘을 넣어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며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우리의 농업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하며 종자혁명을 계속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 강원도를 비롯하여 도처에서 토지정리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전국농업부문일꾼열성자회의」(1999.1.14-15)에서 다짐한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것’ 등에서 농업법의 제정배경을 찾을 수 있다.

이 법에서는 농업을 인민경제 2대부문의 하나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제2조). 농업생산을 중대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업원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농업의 경리형태는 사회주의적 경리형태이고, 여기에는 국영 경리와 협동경리가 있는 바 협동경리는 점차적으로 국영경리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4조), 농업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한 ‘주체농법’을 발전시켜 농업생산에서 구현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7조). 나아가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도 강조하고 있다(제8조).

2) 대외경제 관련 법제의 동향

(가) 사회주의헌법에 나타난 개혁·개방 관련 조항

대외관계 조항

1972년 헌법 제16조에서 “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 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②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2년 헌법에서는 제16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영역안에 있는 다른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북한내의 외국인(투자자 및 관광객 등)에 대한 권리보장 규정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어 제17조

제1항은 1972년 헌법 제16조 제1항을 개정하여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며 대외활동 원칙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대외정책의 기본이념과 대외활동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은 대외정책 부분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1998년 헌법에도 변함없이 규정되어 있다. 1972년 헌법부터 규정된 대외관계 조항은 1992년 헌법에 좀더 구체화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북한 영역내에서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대외관계에서 외국인에 대한 투자유인책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주, 평화, 친선은 이전 헌법의 평등권, 자주권에서 진일보한 태도 표명이지만 자주를 강조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 대외경제관계 조항

1972년 헌법 제3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1992년 헌법은 더욱 구체화되어 제36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에서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제38조에서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998년헌법에서는 폭을 더 넓혀 제36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에서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로 수정 · 보충되었다.

헌법상의 변화를 요약하면 대외무역 조항은 1948년 헌법부터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당시엔 극히 형식적으로 국가가 주도한다는 것만 언급하였다. 그 이후 1972년 헌법에서는 좀더 발전하여 평등과 호혜원칙을 제시하였고 관세정책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1992년 헌법에서는 외국인의 합영 · 합작을 장려하는 규정을 두어 대외 경제개방을 헌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998년헌법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대외무역의 주체를 종전의 ‘국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를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로 확대시켰으며,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는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나진 · 선봉 경제무역지대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같은 헌법사의 변화만 보더라도 북한이 경제회생을 위해 자립경제 원칙하에 경제 개방을 점진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나) 합영법의 동향

□ 제정배경

북한이 경제개방과 관련하여 취한 첫 번째 조치가 합영법 제정이다. 이것은 1970년대부터 비롯된 북한경제의 침체현상이 가져다 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6개년 경제계획(1971-1977)기간 중 서방의 자본과 기술도입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1979년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정과 ‘경제특구’ 설치에 고무된 대내외적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실질적 대처는 이루어지지 못하여 자력갱생의 민족적 자립경제 노선을 견지한 채 경제회생을 모색하다 보니 경제개방은 그만큼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1984년에 이르러서야 경제개방 정책을 문건화하기 시작했다. 즉, 1984년 북한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1984.1.25-27)에서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남남협조와 대외경제 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문건을 채택하였다. 이 문건은 대외 경제협력이 대내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수적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경제기술 교류, 무역경제 협작을 널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경제개방 관련 최초의 법제가 합영법이다.

□ 합영법제의 제정과 개정경과

최초의 합영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으로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제정되

었다. 이어 1985년 3월 20일에 정무원 결정 제4호로 ‘합영법시행세칙’이 제정되었으며, 합영법관련법제로 “합영회사소득세법”과 “외국인소득세법”이, 1985년 3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제정되었고, “합영회사소득세법 세칙”과 “외국인소득세법 세칙”이 1985년 5월 17일 정무원 결정 제22호 및 제23호로 제정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엔 합영법 체제만으로 경제개방 정책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인 개방체제로 전환하였다.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74호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할데 대하여’를 채택함으로써 제2의 개방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합영법 관련 법제에도 개정의 움직임이 잦았는데, 우선 1985년의 합영법 시행세칙을 1992년 10월 16일 정무원 결정 제148호로 개정하였다. 이후 1994년 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합영법”은 1984년 합영법의 전면 개정판이다.

이 개정 합영법에 근거하여 1995년 7월 13일 “합영법시행규정”을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1985년 합영법 시행세칙, 1992년의 합영법 시행시책의 개정에 이은 세 번째 시행규정인 셈이다.⁷⁾

7) 1992년까지는 ‘시행세칙’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1995년엔 ‘시행규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지금은 북한의 모든 자료들이 예전의 시행세칙도 시행규정으로 바꿔쓰고 있다.

그리고 1985년의 “합영회사소득세법”과 “외국인소득세법”은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되고 1993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법령으로 승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으로 개편되었고, 1985년의 “합영회사소득세법 세칙”과 “외국인소득세법세칙”은 1994년 2월 21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시행규정”으로 개편되었다.⁸⁾

북한 경제개방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었던 합영법제는 10여년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다가 1990년대에 법제를 새롭게 재정비하면서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북한에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마련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위상도 바뀌었다. “외국인투자법”이라는 상위 법제하에 편입되어 합작법, 외국인기업 등과 같은 수준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합영법은 1980년대 경제개방을 위한 실험 법제에서 벗어나 1990년대 경제개방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제로 거듭난 셈이다. 그 이후 합영법은 다른 대외경제 관련 법제들과 더불어 1999년 2월 26일, 2001년 5월 17일, 2004년 11월 30일 등 4차례에 걸친 수정보충이 있었다.

8) 1984년 법들이 소득세에 국한된 것이었던 데 반해 1993년 법은 소득세 이외에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지방세 등을 종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 합영법의 주요내용

1984년 합영법은 모두 5개장(제1장 합영의 기본, 제2장 합영회사의 조직, 제3장 이사회와 경영활동, 제4장 결산과 분배, 제5장 합영회사의 해산과 분쟁해결)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4년 합영법은 모두 5개장(제1장 합영법의 기본,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 제3장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제4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제5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4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4년 법이 비교적 간략하게 원칙적인 것들만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1994년 법은 좀 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84년 법 조항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제1조), “합영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규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제4조), “합영회사는 토지를 사용할 때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제21조)]는 1994년 법에서 다음과 같이 삭제하거나 완화하였다.[“합영기업은 경영활동을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제8조),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 유리한 토지이용 조건의 제공같은 우대를 한다”(제7조)]

1984년법이 ‘합영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데 비해 1994년법부터는 ‘합영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994년 법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나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대한 내각 대

외경제기관과 대등한 예우이다. 이것은 1990년대에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나선 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기업과 외국인의 투자를 극대화하고자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면서 합영법도 이에 맞게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04년의 법은 10여개 조항을 수정보충하였다. 첫째, 합영절차에 있어서 이전에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합영계약을 맺은데 비해 합영계약을 맺고 관계기관들의 협의를 받는 것으로 순서를 바꿨다. 그리고 기관의 명칭이 ‘중앙무역 지도기관’이 ‘중앙경제협조 관리기관’으로 바뀌었다. 중앙경제협조 관리기관은 합영기업 창설 신청문건을 접수한날로부터 50일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15일안으로 단축시켜 기업의 편의를 도모했다(제9조). 또한 ‘합영기업의 등록’이나 ‘기업을 등록한 날’이라는 문구에서 ‘등록’을 ‘주소등록’으로 구체화하였다(제10조).

지사나 대리점 개설의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했던 것을 ‘중앙경제협조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완화하였으며 (제13조), 제14조 3항으로 ‘상표권, 공업도안권, 기술비결 같은 지적재산권의 투자는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항을 신설하였다. 합영기업의 등록자본도 총투자액의 30-70% 이상에서 20%이상으로 완화되었고(제15조1항), ‘재정부기성원’을 ‘재정회계원’으로(제18조1항), ‘연간재정부기결산서’를 ‘연간회계결산서’로(제40조) 바꿨으며, ‘재정검열원은 종업원이 아닌 성원으로 이사회에서 임명한다’를 추가하였다(제19조

1항). 존속기간의 계산은 ‘기업을 등록한 날’에서 ‘기업창설을 승인한 날’부터 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제45조2항).

□ 합영법의 기본원칙

이 법의 목적은 세계각국과의 경제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데에 있다.(제1조) 합영당사자는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의 법인 또는 개인이며 재외 동포도 당사자에 포함된다(제2조, 제7조). 합영의 분야는 과학 기술, 공업, 건설, 운수를 열거하고 기타 여러 부문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합영장려 대상으로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 건설 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을 들고 있다(제3조).

합영기업 운영상의 책임은 유한책임이며(제4조), 출자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독자적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있다(제5조). 합영기업은 나선 경제무역지대에 창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타지역에도 창설할 수 있다(제2조).

합영기업은 북한의 법인이며 북한은 합영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합영장려 대상기업(제3조)과 재외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감면, 유리한 토지이용 조건 제공 등의 우대조항을 두고 있다(제7조).

64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9

(다) 합작법의 동향

합작법은 외국인투자법과 함께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되고 1992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회의 법령으로 승인되었다. 그리고 1999년 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개정되었으며, 최근 2004년 11월 30일 2차 수정보충이 있었다. 합작법은 모두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합작법 시행규정은 1995년 12월 4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되었다. 이 규정은 모두 7개장(제1장 일반규정, 제2장 합작 기업의 창설, 제3장 투자, 제4장 경영활동, 제5장 결산 및 투자 몫 상환, 이윤분배, 제6장 존속기관 및 해산, 제7장 감독통제 및 분쟁해결) 1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수정보충된 내용은 합영법과 유사하다.

합작법이 외국인투자법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조문으로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합작법 시행규정은 비교적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의 적용과 운영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라) 외국투자은행법의 동향

외국투자은행법은 1993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2호로 채택되었고, 1993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

9기 제6차회의 법령으로 승인되었으며,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개정되었고, 2002년 11월 7일 수정되었다. 이 법은 모두 5개장(제1장 외국투자은행법의 기본, 제2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제3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제4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투자은행법 시행규정은 1994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48호로 승인되었다. 그 후 두차례(1999.6.26, 2002.12.26) 수정되었는 바, 이 규정은 모두 6개장(제1장 일반규정, 제2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제3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제4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제5장 외국투자은행의 해산,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6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외국투자은행 부기계산 규정은 1996년 7월 15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되었으며, 모두 5개장(제1장 일반규정, 제2장 부기문건작성 및 부기계산원칙, 제3장 부기계산자리와 그 계산방법, 제4장 부기결산, 제5장 부기계산에 대한 감독통제) 70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의 동향

이 법은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되고 1993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법령으로 승인되었다. 그 이후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개정되었으며, 이후 두 차례(2001.5.17,

2002.11.7) 수정보충되었다.

이 법은 모두 9개장(제1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의 기본, 제2장 기업소득세, 제3장 개인소득세, 제4장 재산세, 제5장 상속세, 제6장 거래세, 제7장 영업세, 제8장 지방세, 제9장 제재 및 신소) 6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법의 시행규정은 모두 8개장(제1장 일반규정, 제2장 기업소득세, 제3장 개인소득세, 제4장 재산세, 제5장 상속세, 제6장 거래세, 제7장 영업세, 제8장 지방세, 제8장 제재 및 신소) 8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금법과 세금법 시행규정의 채택으로 적어도 외국 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북한당국의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법제는 1985년의 합영회사 소득세법과 외국인 소득세법 및 이들의 시행세칙을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제는 구법제에 비해 새로운 세목을 대폭 신설한 점과 세율 및 조세감면 체계를 다양화 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개정(즉, 세제의 재정비)은 중국과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의 조세제도 내지 조세감면을 통한 투자유인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 되기도 한다.⁹⁾

9)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한국법제연구원, 1994), p.101

(바) 외화관리법의 동향

이 법은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결정으로 채택되고 1993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법령으로 승인되었다. 그리고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으로 개정되었으며, 이 후 두 차례(2002.2.21, 2004.11.16) 수정보충되었다.

이 법은 모두 4개장(제1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제2장 외화수입과 이용, 제3장 외화반입과 반출, 제4장 외화관리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에 수정보충된 내용은 이전에는 공민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 기준안에서만’ 보유하여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제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외화를 제한없이 보유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기준이 넘는 외화에 대해서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다(제15조).

외화관리법 시행규정은 1994년 6월 27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되었는데 이 때 것은 폐기하고 2002년 3월 14일 다시 채택하였다. 새로 제정된 규정은 2004.12.6 수정되었으며, 4개장(제1장 일반규정, 제2장 외화수입과 이용, 제3장 외화의 반입과 반출, 제4장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외화수입이 있거나 외화를 이용하는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이나, 예외적으로 북한내에서 외화수입이 있거나 외화를 이용하는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과 해외동포에게도 적용한다(법 제10조).

(사) 토지임대법의 동향

이 법은 1993년 10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되었고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개정되었으며, 모두 6개장(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제2장 토지의 임대방법, 제3장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 제4장 토지의 임대료, 제5장 토지이용권의 반환,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42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법의 시행규정은 1994년 9월 7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되었고 모두 6개장(제1장 일반규정, 제2장 토지의 임대방법, 제3장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 제4장 토지의 임대료와 사용료, 제5장 토지이용권의 반환,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10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이용하는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제1조).

(아) 세관법의 동향

이 법은 1983년 10월 14일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6차(1987.2.26, 1990.5.17, 1993.11.17, 1999.1.28, 2001.7.26, 2005.8.30)에 걸친 수정보충이 있었다. 2005년 수정보충된 내용을 보면 ‘수출입허가’, ‘반출입승인을 받지않은 물자’를 ‘가격승인을 받지않은 물자’로 수정보충하였으며(제17조), 제35조 2호에서 ‘외국투자기업’을 ‘일부 외국투자기업’으로 제한하였다.

이 법은 모두 5개장(제1장 세관법의 기본, 제2장 세관수속, 제3장 세관검사, 제4장 관세, 제5장 제재 및 신소) 51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관세를 정확히 적용하여 대외무역에서 규율과 질서를 세우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는 데 두고 있다(제1조).

(차) 기타 관련법제

이상에서 살펴 본 주요 외국인 투자관계 법제 이외에 기타 관련 법제로 대표적인 것은 민법, 민사소송법, 대외경제계약법, 보험법, 공증법, 대외민사관계법 등이 있다.

〈기타 관련 법제 주요내용〉

- 민법(1993.9.23개정) 제10조(북한지역내의 외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적용)
- 민사소송법(1994.5.25채택) 제6조(북한지역내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
- 대외경제계약법(1995.2.22채택) 제2조(대외경제계약에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계약이 속한다) 제11조(북한지역에 외국투자기업의 설립……계약의 체결은 내각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보험법(1995.4.6.채택) 제3조(경제무역지대에서는 북한의 해당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해외동포도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북한지역내에 있는 외국기관, 외국투자 기업, 외국인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 북한지역내에 있는 외국투자보험기업이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제8조(보험자는 외국투자보험기업이 되고 피보험자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이 된다)
- 공증법(1995.2.2.채택) 제8조(북한지역내의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적용)
- 대외민사관계법(1995.9.6.채택) 제1조(…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공고발전시키는 데 이바지) 제27조(북한 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인투자설립같은 재산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북한 법을 적용) 등

2. 시기별 입법동향

가. 1990년대 법제정비 상황

1990년대에 북한법제의 특징은 경제개혁, 개방과 밀접한 연

관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제법제들이 이 시기에 정비되었다. 대내 경제개선조치를 위한 법제의 개정이나 제정뿐만 아니라 대외 경제개방과 관련한 법제의 대대적인 정비는 북한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외국기업의 유치시, 대부분의 외국기업이 자본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점을 고려하여, 이에 걸맞는 법제의 정비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대부분의 대외경제 관련 법제는 국제적으로 갈등의 여지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 필요하였다. 1984년의 합영법의 제정은 북한도 중국처럼 외자유치를 의도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실제적용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첫 작품의 실패는 10년의 공백을 가져왔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방기업들도 수긍할 수 있는 법제로 정비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회의별 법률제정 상황〉

최고인민회의(제10기)	개최일(기간)	주요 법률제정상황
1차회의	1998. 9. 5(1일)	사회주의헌법 수정, 보충
2차회의	1999. 4. 7~9(3일)	인민경제계획법 채택
3차회의	2000. 4. 4~6(3일)	교육법, 대외경제증재법, 민용항공법 승인
4차회의	2001. 4. 5(1일)	기공무역법, 김문법, 저작권법 승인
5차회의	2002. 3. 27(1일)	국토계획법 제정
6차회의	2003. 3. 26(1일)	군사복무법, 기구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회계법 승인

이상의 법제에서 보듯이 대내 경제개혁 관련 법제로는 사회주의재산관리법, 인민경제계획법, 국토계획법 등을 대표적으

로 들 수 있고, 대외경제개방 관련법제로는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토지임대법, 대외경제계약법, 대외민사관계법, 가공무역법, 4개특구법(나진, 선봉경제무역지대법,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또한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대외경제관계법 9개를 개정하였다. 즉,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토지임대법」, 「외국투자은행법」, 「합영법」 등이다.¹⁰⁾ 이것은 1998년 헌법수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성격이 짙다.

1990년대이후 경제관련 법제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함께 북한법제 전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북한이 단기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대내경제 관리개선 조치에 대한 방향은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나. 2000년대 법제정비 상황

북한은 2000년대 이후 경제분야에 집중하여 법제를 정비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진길상, 「대외경제관계법의 개정」, 《조선상공인신문》, 1999년 9월 17일자.

1) 2000년대 초기(2000-2004.6)에 정비된 법제들

도시경영법(2000.2.3 수정보총, 2004.4.22 수정), 철도법(2000.2.3 수정보총), 민용항공법(2000.3.23 채택, 2002.5.9 수정보총),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2000.4.19), 국가법(2000.5.4 수정보총, 2000.7.24 수정, 2001.7.19 수정보총, 2002.10.24 수정보총), 국장법(2000.7.24 수정), 공민등록법(2000.7.24 수정), 신소청원법(2000.7.24 수정), 환경보호법(2000.7.24 수정), 유용동물보호법(2000.7.24 수정), 의료법(2000.8.10 보총), 가공무역법(2000.12.26), 인민보건법(2001.2.1 수정보총), 도로법(2001.3.1 수정보총), 저작권법(2001.3.21), 갑문법(2001.3.21), 양어법(2001.4.12 수정보총), 합영법(2001.5.17 수정보총), 인민경제계획법(2001.5.17 수정보총),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2001.5.17 수정보총, 2002.11.7 수정), 세관법(2001.7.26 수정보총), 전력법(2001.9.27 수정보총), 체신법(2001.9.27 수정보총), 손해보상법(2002.8.22), 건설법(2001.9.27 수정보총, 2002.6.24 수정보총), 산림법(2001.10.18 수정보총), 외화관리법(2002.2.21 수정보총), 상속법(2002.3.13), 국토계획법(2002.3.27), 재정법(2002.5.9 수정보총, 2004.4.22 수정보총), 보험법(2002.5.16 수정보총), 사회주의상업법(2002.5.22 수정보총, 2004.6.24 수정보총), 농업법(2002.6.13 수정보총), 품질감독법(2002.6.13 수정보총, 2003.8.21 수정보총), 제품생산허가법(2002.7.3),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2002.9.12), 민사소송법(2002.10.24 수정보총), 라선경제무역지대법(2002.11.7 수정), 외국투자은행법(2002.11.7 수정), 금강산관광지구법(2002.11.13 채택, 2003.4.24 수정보총), 개성공업지구법(2002.11.20 채택, 2003.4.24 수정보총), 하천법(2002.11.27 채택, 2004.6.24 수정보총), 과수법(2002.12.4), 도시계획법(2003.3.5), 회계법(2003.3.5), 화폐류통법(2003.6.5 수정보총),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2003.6.11), 장애자보호법(2003.6.18), 마약관리법(2003.8.13), 원산지명법(2003.8.27), 수로법(2004.3.10), 배길표식법(2004.3.17), 형법(2004.4.29 수정보총), 형사소송법(2004.5.6 수정보총), 해사감독법(2004.6.24 수정보총), 소프트웨어산업법(2004.6.30)

2) 대중용 법전 증보판(2004.7-2005.12)에 의거한 제정법제들

중앙은행법(2004.9.29), 도로교통법(2004.10.6),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2004.12.22), 약초법(2004.12.29), 대동강오염방지법(2005.2.10 채택, 2005.7.19 수정보총), 소방법(2005.2.24), 국가예산수입법(2005.7.6), 북남경제협력법(2005.7.6), 간석지법(2005.7.20), 담배통제법(2005.7.20), 기상법(2005.11.9), 화약류취급법(2005.11.9), 환경영향평가법(2005.11.9), 공무원자격판정법(2005.11.23), 유기산업법(2005.11.23)

3) 대중용 법전 증보판(2004.7-2005.12)에 의거한 개정법제들

가족법(2004.12.7 수정보총), 공증법(2004.12.7 수정보총), 공업도안법(2005.8.2 수정보총), 교육법(2005.12.13 수정보총), 국토계획법(2004.10.26 수정보총), 국토환경보호단속법(2005.12.13 수정보총), 규격법(2005.9.13 수정보총), 과학기술법(2004.12.23 수정보총, 2005.12.13 수정보총), 도로법(2004.12.14 수정보총), 라선경제무역지대법(2005.4.19 수정보총), 량정법(2005.12.13 수정보총), 마약관리법(2005.5.17), 무역법(2004.12.7 수정보총), 민사소송법(2004.12.7 수정보총, 2005.10.25 수정보총), 민용항공법(2005.8.9 수정보총), 보험법(2005.9.13 수정보총), 산림법(2005.8.2 수정보총), 상표법(2005.8.2 수정보총), 손해보상법(2005.4.19 수정보총), 식료품위생법(2005.12.13 수정보총), 세관법(2005.8.30 수정보총), 전염병예방법(2005.12.13 수정보총), 지하자원법(2004.12.28 수정보총), 합작법(2004.11.30 수정보총), 합영법(2004.11.30 수정보총), 형법(2005.4.19 수정보총, 2005.7.26 수정보총), 형사소송법(2005.7.26 수정보총), 해운법(2004.9.27 수정보총), 환경보호법(2005.4.19 수정보총), 외국인기업법(2004.11.30 수정보총, 2005.5.17 수정보총), 외국인투자법(2004.11.30 수정보총), 외화관리법(2004.11.16 수정보총)

4) 2006-2007년에 정비된 법제들

(가) 상업은행법(2006.1.25)

□ 구성

이법은 6개장 57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장 상업은행법의 기본, 제2장 상업은행의 설립, 제3장 상업은행의 업무, 제4장 상업은행의 회계, 제5장 상업은행의 통합 및 해산,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등이다.

□ 기본개요

상업은행법은 예금, 대부, 결제 같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상업은행의 설립과 업무, 회계, 통합 및 해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업은행의 역할을 높이고 금융거래의 편의를 보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제1조). 상업은행의 설립 원칙은 공정성, 객관성, 실리보장이며(제2조), 업무원칙은 신용준수, 신용의 현대화, 과학화이다(제3조). 운영원칙은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 채산제이고(제4조), 상업은행사업의 지도원칙은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은행이 지도하는 것으로 한다(제6조). 특수경제지대에서 상업은행의 설립운영과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운영은 해당법규에 따른다(제7조2항).

□ 업무

상업은행의 설립승인은 중앙은행이 한다(제9조). 상업은행의 업무의 종류로는 다음의 것들이 규정되어 있다(제18조). 즉, 예

금업무, 대부업무, 돈자리의 개설과 관리업무, 국내결제업무, 대외결제, 수형과 증권의 인수 및 할인, 환자조작업무, 외화교환업무, 거래자에 대한 신용확인 및 보증업무, 금융채권발행 및 광고사기업무, 귀금속거래업무, 고정재산등록업무, 화폐의 팔고사기업무, 이밖에 승인받은 업무 등 12종류이다.

(나) 자금세척방지법(2006.10.25)

□ 구성

자금세척방지법은 32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본개요

자금세척방지법은 금융사업에서 비법적인 자금, 재산의 조성과 유통을 막고 금융체계의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한다(제1조). 자금세척이란 비법적으로 얻은 자금, 재산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그것을 알면서 도와준 행위를 말한다(제2조). 자금세척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공화국영역안의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 등이다(제4조).

□ 자금세척에 이용될 수 있는 자금, 재산

1. 위조 또는 변조한 화폐나 증권, 그 거래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2. 마약, 무기의 밀수, 밀매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3. 비법적인 화폐, 상품매매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4. 비법적인 부동산거래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5. 추가적 소득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않고 대부, 투자같은 신용거래로 얻은 자금이

나 재산, 6. 국가납부금과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으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7. 법인으로 가장하고 경제거래를 하여얻은 자금이나 재산, 8. 비법적인 귀금속, 유색금속의 거래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9. 매음, 도박, 뇌물, 협잡, 횡령, 강도 같은 행위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등이다(제5조).

□ 자금세탁방지의 국제공조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다른 나라의 제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사업을 협조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에 자금세탁방지 사업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자금세탁방지 사업의 협조는 자료조사, 정보교환, 자금이나 재산의 동결 또는 압수, 몰수, 범인 인도같은 방법으로 한다(제25조).

다른 나라에서 제기한 자금세탁방지 협조를 거절하는 경우는 1. 공화국의 주권과 사회경제적안정, 발전을 파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경우, 2. 공화국의 법에 저촉될 경우, 3. 피고의 권리를 충분히 담보할 수 없을 경우, 4. 인도주의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5. 공화국에서 내린 최종판결이 기본요인으로 될 경우, 6. 외교적 경로밖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전달되었을 경우 등이다(제26조).

(다) 중소탄광 개발 및 운영규정(2006.12.11)¹¹⁾

11)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818호(2006.12.8-2006.12.14)

이 규정은 기관·기업소·단체들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석탄과 주민용 땔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은 규모의 탄광들을 개발·운영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구체적인 절차, 방법들을 규율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제정한 입법취지는 원유 및 여타 에너지원의 도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생산 중대가 가능한 석탄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목적과 각지의 지방 단위 및 사업단위들에게 중소탄광개발·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석탄수요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할 목적에 있다.

(라)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시행규정(2007.6.6)

이 규정은 열 및 내압설비 감독사업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설비사고를 막고 에너지 낭비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모두 4장 47개 조로 구성된 규정에는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정의와 그에 속하는 설비와 시설물을 밝힌 데 이어, 규정의 적용대상과 감독대상, 감독절차와 방법, 감독결과의 처리 등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집행에 요구되는 제반 원칙적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규율되어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자체 자원과 기술에 의존하는 자력갱생형 기술개선 정책을 견지해오고 있으며, 발전 및 산업설비가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되어 전력낭비와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인 바, 이 규정의 채택은 해당부문 근로자들로 하여금 열 및 내압설비

감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운영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설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 낭비현상을 줄여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²⁾

(마) 저작권법 시행규정(2007.11.2)

□ 개요

이 규정은 저작권자 활동보장·권리보호 및 저작물 이용시 염격한 제도, 질서 확립을 위해 채택되었다. 이 규정에서는 “저작권이 창작자의 인격적·재산적 권리임을 명시”하고, 저작권 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대상 등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의 모법인 저작권법은 2001.4 제정되었고, 2006.2 상업적 목적의 경우 공개자료도 저작권 대상임을 명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보충한 바 있다.

저작권법 시행규정 제정은 기존 저작권법의 집행을 위한 세부규칙을 명문화하고 저작권 보호 범위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북한 저작물의 대외 유출·복제출판에 적극 대처하려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¹³⁾

□ 지적재산권관련 동향

북한은 “지적재부의 창조와 보호” 제목의 보도를 통해 ‘세계

12)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847호(2007.7.2-2007.7.8)

13)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865호(2007.11.5-2007.11.11)

지적재산권의 날' (4.26)에 즈음하여 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조하였다(4.26, 중방). 보도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지적재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정보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오늘 세계적으로 지적 소유권과 관련한 사업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현시대는 지식경제의 시대로서 지적재산을 창조하고 소유한 사람 · 기관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974년 8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한 이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의 가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80.6), 특허협력조약(PCT)('80.6), 의장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97.6), 문학 · 과학 · 예술작품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03.1) 등에 가입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 과학기술중시 사상을 내세운 가운데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 · 제도의 정비에 주력하여 발명법 ('98.5) · 상표법('98.1) · 공업도안법('98.6) · 저작권법('01.4) 등을 제정하였고, 지적재산 유통 제도화('04.1), 「컴퓨터소프트웨어중재위원회」 설립('04.5) 등의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3. 최근 법제정비의 특징

가. 대중용 법전 편찬으로 총정리

2004년 6월 대중용법전을 편찬한 이유와 동시에 대해 ‘공민들이 법을 알고 스스로 지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회주의 헌법과 현행 부문법들을 자모순으로 수록한 법전을 편찬하여 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중용 법전의 편찬은 북한 법제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법에 대한 인식이 발전적 차원에서 크게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112개 법률만을 한데 묶은 것에 불과하지만 법제정비의 황무지에 비견되었던 북한사회에서 우리의 대법전 크기의 형태로 법전을 편찬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중용 법전은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편찬한 것이 아니라 자모순으로 편찬했기 때문에 법률들의 성격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나. 증보판을 통한 법제정비 의지 표현

증보판 편찬사에서는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2004년 7월부터 2005년말까지라는 기한을 명시하여 시의적절하게 법제정비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새로 채택되었거나 수정보충된 법률’을 수록하였으며, 법 수정보충과 관련하여 정령내용도 소개하

고 있다. 증보판에는 모두 42개법률이 수록되었는데 새로 채택된 법률 15개법률과 수정보충된 32개법률이 그것이다.

다. 비공개 법률

대중용 법전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문헌법(1995.1.25), 기밀법(1997.6.25 채택, 1999.2.26 수정), 사회안전단속법(1992.12.28 채택, 1999.3.24 수정보충), 검찰감시법(1997.1.15 수정보충, 1998.11.19 수정보충), 형민사감정법(1998.11.26), 판결, 판정집행법(1997.1.23 채택, 1997.9.5 수정, 1998.11.19 수정보충), 발권법(1999.3.24 수정보충), 귀금속관리법(1997.10.1 채택, 1999.2.26 수정), 행정처벌법(2004.7.14)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되었다고 법률명만 밝혀진 법률들로는 군사복무법(2003.3.26), 기구법(2003.3.26) 등이 있다.

라. 환경관련 법제의 정비

1986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고 1992년 헌법에서 ‘국가는 생 산에 앞서 환경보호 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로 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제57조)’고 규정하여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조항은 1998년 헌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이후 환경보호법은 3차례에 걸쳐(1999.3.4 수정보충, 2000.7.24 수정, 2005.4.19 수정보충) 정비되었고, '90년대 중반 이후 대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로 국토가 황폐해지자 관련 법·제도 등을 정비해 왔다. 내각에 전문부서인 「국토환경보호성」(1996.10)을 신설한데 이어 「국토환경보호질」(10.23)을 제정하는 등 환경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이후 「물자원법」, 「바다오염방지법」('97), 「국토환경보호단속법」('98) 등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북한은 2000년 이후에는 더욱 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적 환경협력분야에 참여해 왔다. 그리하여 국제기구(UNDP, UNEP)와 공동으로 「환경상태보고서」 발간('04.8), 중국과 「환경협력협정」 체결('05.3), 유엔기후협약에 따른 「교토의 정서」 가입('05.4) 등 환경보호와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제정비 차원에서는 하천법(2003)과 환경영향평가법(2005)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 특징은 「국토개발 및 건설과정에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했을 경우 중지시키는」 등 엄격한 법집행(4장) 예고와 함께 환경문제 관련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강조한 점 등이다.

북한이 이와 같이 환경관련 국제행사에 참가하고, 관련법 제정 및 이를 대외에 공개한 것은 북한이 그동안 「공해없는 나라」라고 선전해온 것과는 달리 환경파괴 및 오염상태가 상당한 수

준에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대외 이미지 개선과 필요시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관련자금 및 설비를 지원받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

형법에서도 환경범죄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즉, 북한형법(2004년 수정)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중 '제3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를 규정하여 '환경보호질서위반죄' (제182조)를 비롯하여 '토지남용, 폐경죄' (제173조), '토지유실죄' (제174조), '지하자원개발 및 채굴질서위반죄' (제175조), '금채취, 제련죄' (제176조), '산림조성, 보호, 이용질서위반죄' (제177조), '산림람도벌죄' (제178조), '과실산불죄' (제179조), '산을 개간한 죄' (제180조), '수산 및 동식물자원보호관리질서위반죄' (제181조), '하천관리질서위반죄' (제183조), '도로관리질서위반죄' (제184조) 등을 두고 있다.

형법상 환경범죄의 경우 '환경보호' 개념이 '국토관리' 개념과 대등하게 절로 격상되었다는 점은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더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환경보호질서위반죄' (제182조)의 경우 1987년 형법에서는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만 규정하고 있었으나(제89조), 1999년 형법에서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 4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89조). 2004년 형법에서는 단순 범죄는 '2년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약화되었

14) 북한동향 780호

으나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으로 오히려 강화되었다.

마. 법제정비 수준의 향상

최근 북한의 법제정비는 그 치밀함과 세련성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형법에 대해서 2005년도 한 해에만 2회(2005.4.19, 2005.7.26)의 수정 보충이 있었다. 즉, ‘뇌물죄’(제242조)의 경우 단순뇌물죄만 규정하고 있었으나(2년이하의 노동단련형), ‘대량뇌물죄’를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3년이하의 노동교화형). 그리고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제18조)에서 제18조 2항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 범죄로 수정보충전에는 ‘고의적중살인죄’를 구성요건으로 하였으나 이것을 삭제하고 ‘고의적경살인죄’까지 포함하는 ‘고의적살인죄’와 ‘고의적중상해죄’를 구성 요건으로 보충하였다.

또한 제30조(무기로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3항의 경우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우’를 ‘범죄를 병합하거나 형기 를 합산할 경우’로 ‘형기’라는 단어를 보충하여 정확한 문장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제31조(노동단련형)도 같은 경우인데 이 조항을 수정 보충하지 않은 것은 법령 개정시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13조(상표권침해죄)는 제113조(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침해죄)로 구성요건을 보충하였으며, 형량도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서 노동단련형으로 약화되었다. 단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115조(귀금속, 유색금속밀매죄)는 ‘비법적으로 팔고 산 자’를 ‘밀수, 밀매한자’로, 제187조 2항은 ‘여러 사람이 죽었거나’를 ‘여러명의 인명피해를 주었거나’로 문장을 다듬었다. 제241조 1항은 정상이 무거운 경우가 보충되었고, 295조 2항은 ‘또는 강요하여’ 한 경우를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수시로 수정보충을 통하여 형량의 적정성과 문장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은 법제정비에서 전향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바. 경제 및 국토관리 관련 법률 제정의 증가

경제관련 법률은 2000년 이전에는 계획경제체제 강화에 중점을 둔 반면, 2000년 이후에는 개혁·개방에 대비하고, 시장질서 도입과 대외개방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0년 이후 개정된 경제 및 국토관리 관련 법률〉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2000.4.19), 가공무역법(2000.12.26), 저작권법(2001.3.21), 합영법(2001.5.17 수정보총, 2004.11.30 수정보총), 인민경제계획법(2001.5.17 수정보총),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2001.5.17 수정보총, 2002.11.7 수정), 세관법(2001.7.26 수정보총), 순해보상법(2002.8.22, 2005.4.19 수정보총), 건설법(2001.9.27 수정보총, 2002.6.24 수정보총), 산림법(2001.10.18 수정보총, 2005.8.2 수정보총), 외화관리법(2002.2.21 수정보총, 2004.11.16 수정보총), 상속법(2002.3.13), 국토계획법(2002.3.27, 2004.10.26 수정보총), 재정법(2002.5.9 수정보총, 2004.4.22 수정보총), 보험법(2002.5.16 수정보총, 2005.9.13 수정보총), 사회주의상업법(2002.5.22 수정보총, 2004.6.24 수정보총), 농업법(2002.6.13 수정보총), 품질감독법(2002.6.13 수정보총, 2003.8.21 수정보총), 제품생산허가법(2002.7.3),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2002.9.12), 민사소송법(2002.10.24 수정보총), 라선경제무역지대법(2002.11.7 수정, 2005.4.19 수정보총), 외국투자은행법(2002.11.7 수정), 금강산관광지구법(2002.11.13 채택, 2003.4.24 수정보총), 개성공업지구법(2002.11.20 채택, 2003.4.24 수정보총), 하천법(2002.11.27 채택, 2004.6.24 수정보총), 과수법(2002.12.4), 도시계획법(2003.3.5), 회계법(2003.3.5), 화폐류통법(2003.6.5 수정보총),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2003.6.11), 원산지명법(2003.8.27), 수로법(2004.3.10), 해시감독법(2004.6.24 수정보총), 소프트웨어산업법(2004.6.30), 중앙은행법(2004.9.29), 국가예산수입법(2005.7.6), 북남경제협력법(2005.7.6), 간석지법(2005.7.20), 유기산업법(2005.11.23), 공증법(2004.12.7 수정보총), 공업도안법(2005.8.2 수정보총), 국토환경보호단속법(2005.12.13 수정보총), 규격법(2005.9.13 수정보총), 과학기술법(2004.12.23 수정보총, 2005.12.13 수정보총), 도로법(2004.12.14 수정보총), 량정법(2005.12.13 수정보총),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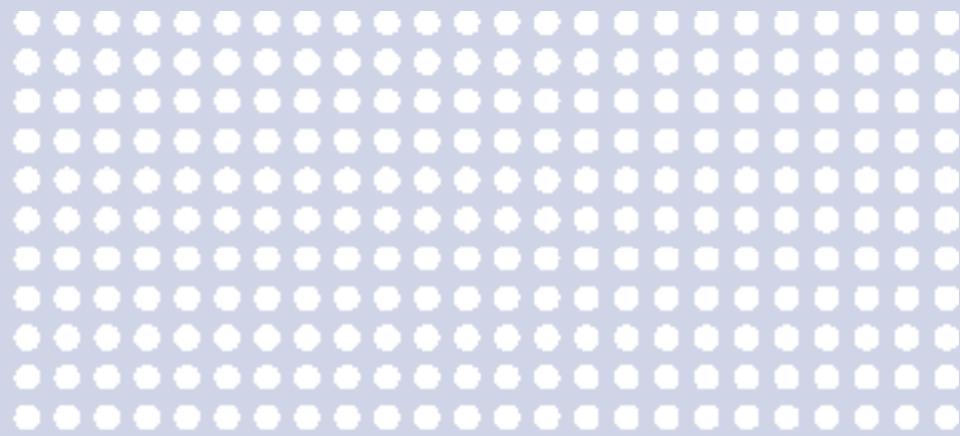
88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9

역법(2004.12.7 수정보충), 상표법(2005.8.2 수정보충), 세관법(2005.8.30 수정보충), 지하자원법(2004.12.28 수정보충), 합작법(2004.11.30 수정보충), 해운법(2004.9.27 수정보충), 외국인기업법(2004.11.30 수정보충, 2005.5.17 수정보충), 외국인투자법(2004.11.30 수정보충), 상업은행법(2006.1.25), 자금세탁방지법(2006.10.25)



IV

북한 법제정비에 대한 평가와 전망



IV

북한의 법제정비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북한사회의 변화와 법제동향

북한사회의 변화가 급변이냐, 점진적 변화이냐는 단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나, 법제정비 차원에서 보면 경제분야와 사회문화분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1999년 형법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범죄의 유형들이 2004년 형법에서 대거 규정된 현상 속에서도 그 변화는 실감할 수 있다. 법조항 개수에서도 1999년 형법은 161개조항에 불과했으나, 2004년 형법은 303개 조항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2004년 형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탈세죄’(제108조)를 신설하여 대외경제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개인의 상적행위죄’(제110조)도 신설된 조항인데 그 구성요건이 ‘비법적으로 개인이 상행위를 하여 대량의 이득을 얻은 경우’와 ‘특히 대량

의 이득을 얻은 경우'에 처벌하도록 매우 제한적이어서 반대해석을 하면 합법적으로 개인이 상적행위를 소량으로 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조항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개인의 상행위를 일정 정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리대를 하여 대량의 이득을 얻은 자'를 처벌하는 '고리대죄' (제118조), 거간행위를 하여 대량의 이득을 얻은 자를 처벌하는 '거간죄' (제114조),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고 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비법적으로 넘겨주고 받은 죄(제149조) 등의 신설에서도 북한경제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2004년 형법상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의 조항수가 41개조항에서 104개조항으로 증가한 것은 사회주의경제 체제의 침해와 이완현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셈이다.

2. 북한경제의 변화와 법제동향

북한경제는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기(1994-1998)를 거쳐 오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가 발전인지 시행착오인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북한은 다른 나라에서 북한의 경제변화를 일컫는 개혁, 개방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지만 2002년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 보듯이 개선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는 법제정비 동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1998년 헌법 수정 이후 대부분의 법률에 대해 수정보충이 이뤄진 것은 헌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그 하위 법률들이 헌법 정신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되었다.

최근에 수정보충된 대외경제 관련 법제를 보면 나선경제무역지대법, 합작법, 합영법,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법, 외화관리법 등을 들 수 있으며, 경제특구 관련 법제 동향과 대외경제 관련 법제 동향은 다음과 같다.

가. 경제특구 관련 법제 동향

북한이 특구로 지정한 곳은 4곳이다. 그 가운데 경제특구로 특화된 곳은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개성공업지구이다. 금강산관광지구는 관광이 중심이고,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행정이 중심이다.

1)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의 동향

□ 개요

이 법의 최초 제정 당시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이었다. 이 법은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되고, 1993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법령으로 승인되었다. 그 이후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법’으로 바뀌었다. 그 후 두차례(2002.11.7, 2005.4.19)수정보충되었고 그 명칭도 현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이다.

이 법은 모두 7개장 42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선경제무역지대의 지위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다(제2조). 최근 수정보충된 내용은 ‘중앙무역 지도기관’이 ‘중앙경제 협조관리기관’으로 변경된 것 이외에도 ‘외국투자신청을 현지에서 접수하고 관계 기관들의 합의를 받은 다음 그 심의승인을 중앙경제 협조관리 기관에 제기한다’로 하여 ‘관계기관들의 합의’를 보충하였다(제12조 2호).

또한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지대에 대한 투자신청 문건을 받은 날부터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50일, 외국인기업은 80일안에 해당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를 “중앙경제 협조관리기관은 나선시인민위원회로부터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에 대한 창설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5일안에 해당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나선시인민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로 수정보충 하였으며(제13조 1항), 신청에서 결정까지의 기한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투자의욕을 신장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 나선경제무역지대 관련 법제

□ 관련 법률

합영법 제2조 2항은 ‘합영기업은 나선경제무역지대에 창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원칙적으로 나선경제무역지대에 초점이 맞춰진 법제들로는 합영법 이외에도 합작법(제5조), 외국투자은행법(제2조), 외국인투자법(제9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외국인투자법(제9조)은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 창설된 외국인투자 기업은 특혜적인 경영 활동 조건을 보장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990년대 나선경제무역지대 관련 규정)

‘나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 및 체류규정’(2000.2.19 결정, 모두 34개조문), ‘나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규정’(2000.10.27 결정, 2005.1.17 수정, 모두 29개조문), ‘나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2000.10.27결정, 모두 4개장 20개조문), ‘나선경제무역지대 중개점임자 대리업무규정’(1999.3.21결정, 모두 31개조문), ‘나선경제무역지대 청부건설규정’(20000.10.27결정, 20005.1.17 수정, 모두 4개장 42개조문), ‘경제무역지대 통계규정’(1999.3.6결정, 모두 5개장 47개조문), ‘나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재정관리 규정’(2000.5.13 결정, 2005.1.17 수정 모두 10개장 95개조문), ‘나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2000.9.23 결정, 2002.5.2, 2004.12.6, 2005.1.17 수정보충, 모두 5개장 78개조문), ‘나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2000.4.29 결정, 모두 6개장 38개조문) 등¹⁵⁾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규집(외국투자부문)』, (평양:법률출판사,2005)

이상의 관련규정들은 1990년대에 채택되었던 것을 폐지하고, 2000년대에 새로 채택된 규정들이다. 그 밖의 규정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이전의 자료를 참고로 정리하였다.

〈1990년대 나선경제무역지대 관련 규정〉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1993.12.30 결정, 모두8개장 48개조문), ‘자유무역규정’(1994.4.28 결정, 모두4개장 28개조문) 경제무역지대건물 양도 및 저당규정’(1995. 8.30 결정, 모두 6개장(64개조문) ‘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1996.2.14결정, 모두 5개장 43개조문), ‘경제무역지대 공업지구 개발 및 경영 규정’(1996.4.30결정, 모두 4개장 31개조문) ‘경제무역지대 광고 규정’(1996.4.30결정, 모두 19개조문) ‘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가대리인 규정’(1996.7. 15결정, 모두25개조문) ‘경제무역지대 화폐류통규정’(1996.7.15결정, 모두 26개조문) ‘경제무역지대 국경검역규정’(1996.6.18결정, 모두 19개조문), ‘경제무역지대 경계통행검사규정’(1996.7.15결정, 모두 18개조문) ‘경제무역지대 자동차등록규정’(1996.7.15결정, 모두 15개조문) ‘경제무역지대 가격규정’(1996.9.1결정, 모두 4개장 31개조문) ‘경제무역지대 기업소관리운영규정’(1996.11.23결정, 모두 6개장 41개조문) ‘경제무역지대 가내편의봉사업규정’(1997.4.12결정, 모두 22개조문) ‘경제무역지대 조선원대부규정’(1997.4.12결정, 모두 6개장(39개조문) ‘경제무역지대 국내 투자기업 창설 및 운영규정’(1997.5.17결정, 모두 22개조문)¹⁶⁾

16) 앞으로 ‘경제무역지대 증권거래법’ ‘경제무역지대 저당법’ ‘경제무역지대 투자장려규정’ ‘경제무역지대 통신규정’ ‘경제무역지대 교통규정’ ‘경제무역지대 택시봉사규정’ ‘경제무역지대 환경보호규정’ 등의 법과 규정들 및 시행세칙들을 몇년 내에 정비하여 30여개 규정들을 더 공포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투자편람」p.67)

3) 개성공업지구법의 동향

□ 개요

개성공업지구법은 2002년 11월 20일 채택되어 2003년 4년 24일 1차 수정보충되었다. 구성은 5개장 46개조 부칙 3개조로 되어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업종영역은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이다 (제1조). 그리고 구역은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으로 나눈다(제2조).

우리측의 투자를 의식한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조항으로는 제3조 1항(“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범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 제4조 1항(“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제8조(“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북남사이의 합의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발급’), 제28조(‘남측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사증없이 출입할수 있다’), 제29조(‘공업지구에서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문화, 보건, 체육, 교육분야의 편의를 받으며....’), 제30조(‘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정해진데 따라 개성시를 관광할 수 있다.’), 제

33조(‘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나라로 나가는 물자’), 제37조(‘남측 또는 다른 나라의 로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42조 ‘남측 또는 다른 나라 은행’), 제44조(남측지역으로 송금 가능), 부칙2조(‘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북남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등이 있다. 조문상으로는 다른 나라나 외국인도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남측이 거의 전부이다.

□ 관련 규정

개성공업지구 관련 하위규정으로는 현재까지 15개의 규정이 제정되었다.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2003.4.24), 기업창설운영규정(2003.4.24), 세금규정(2003.9.18), 노동규정(2003.9.18), 관리기관설립운영규정(2003.12.11), 출입, 체류, 거주규정(2003.12.11), 세관규정(2003.12.11), 외화관리규정(2004.2.25), 광고규정(2004.2.25), 부동산규정(2004.7.29), 보험규정(2004.9.21), 기업재정규정(2005.6.28), 회계규정(2005.6.28), 회계검증규정(2005.10),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2006.7.25)

□ 관련 준칙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제정 개성공업지구 주요 사업 준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8개의 준칙이 마련되어 있다. 즉,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 운영준칙(2005.1.27), 개성공업지구 부동산등록준칙(2004.12.17), 개성공업지구 부동산집행준칙(2005.9.1), 개성공업지구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준칙(2005.4.29), 개성공

업지구 건축준칙(2004.11.1), 개성공업지구 노동안전준칙(2005.3.23),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준칙(2006.4.3),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준칙(2006.11.20) 등이 그것이다.

3) 남북경제협력법의 동향(2005.7.6)

남북경제협력법은 2005년 7월 6일 채택되었고, 모두 27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에 이어 세 번째 북한에서 제정된 남북관련 법제이다. 남북경제협력법은 ‘남측과의 경제협력’이라는 법적용대상의 한정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유일한 법률이다. 남북경제협력의 범주를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교류와 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 물자교류’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제2조).

남북경제협력의 원칙으로는 전민족의 이익우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보장, 호상존중과 신뢰, 유무상통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지도기관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며, 협력사업의 방법은 ‘직접거래의 방법’이다(제5조, 제7조).

나. 대외경제 관련 법제 동향

대외경제 관련 법제의 기본법은 ‘대외경제계약법’이다. 이 법은 1995.2.22채택되었고, 1999.2.26 수정보충 되었다. 구성은 5개장 42개조문으로 되어있다. 대외경제 계약에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계약이 포함된다(제2조). 그리고 대외경제 분쟁

해결을 위해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하였다(1999.7.21). 이 법은 4개장 43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경제 분쟁 해결 기구로는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조선해사중재위원회’를 두고 있다(제2조). 분쟁해결 원칙으로는 ‘객관성, 과학성, 공정성, 신속성’을 명시하고 있다(제6조). 또한 ‘대외민사 관계에서 당사자들의 권익을 옹호보장하고, 대외경제 협력과 교류를 공고히하기 위하여’ ‘대외민사관계법’(1995.9.6 채택, 1998.12.10 수정)을 제정하였다.

이상의 3대 대외경제 관련 법제 외에도 ‘공증법’, ‘세관법’, ‘출입국법’, ‘보험법’, ‘무역법’, ‘가공무역법’, ‘토지임대법’, ‘저작권법’ 등이 대외경제 관련 성격을 띤 법제로서 북한 대외 경제의 문제점 해결에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대외경제 관련법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외국투자부문 법제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3. 평가와 전망

198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법제정비는 향후 정책 전개와 방향을 같이 하면서, 헌법 및 관련 법률을 통해 공식적으로 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상황에 따라 국가기구의 효율적인

조직 및 운영을 위한 후속 법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실리 추구,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경제개혁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주민통제는 강화되며, 주민의 생활 향상을 통해 일정 부분 주민의 불만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법제 정비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관계 측면에서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상응하는 실리적 현실노선으로의 변화도 기대된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본격적인 대외경제 개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법제 정비의 긍정적 신호로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측의 대북 경제협력이 활성화 되면서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의 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대북투자에 대한 배려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자세는 남북관계 발전의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측의 대북 투자에 대한 권리주체의 명확성과 투자보호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도 기대된다.

2007년초 북한은 대외경협을 비롯한 제 분야에서 제기되는 법률상 문제들을 상담하는 독자법인인 ‘평양법률사무소’(소장:

허영호)를 개설하였다.¹⁷⁾

평양법률사무소는 외국인 투자기업(합영·합작·외국인기업)과 해외동포,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공민들의 신청과 위임에 의해 법률 봉사를 제공하는 바, 주요 상담법률로는 외국투자관계법제도,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법제도이고, 대외 투자관련 주요 업무로는 투자대상선정 상담, 법률적 문서작성(기업창설·운영·해산·파산, 경제기술타산서, 규약 등) 등이 있으며 무역·운수·금융·보험·지적소유권·부동산이용권 및 법인-법인, 법인-개인 간 민사법률 행위와 관련한 법률상담 사업도 진행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북한은 평양법률사무소의 법률봉사는 공정성·신속성·준법성의 원칙에서 사실과 법·계약을 준수하고, 제공한 봉사에 대하여 당사자와 법 앞에 책임지므로 외국 투자가들이 평양법률사무소와 상담하는 것은 투자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가장 유익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평양법률사무소 개설은 남한과 해외동포 및 외국 투자자들에게 새로 제·개정된 법률과 관련한 전문적인 투자 상담을 진행하여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이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¹⁸⁾

17) 통일부, 『북한동향』822호, 2007년 1월 11일 조선중앙통신

18) 통일부, 『월간북한동향』822호, 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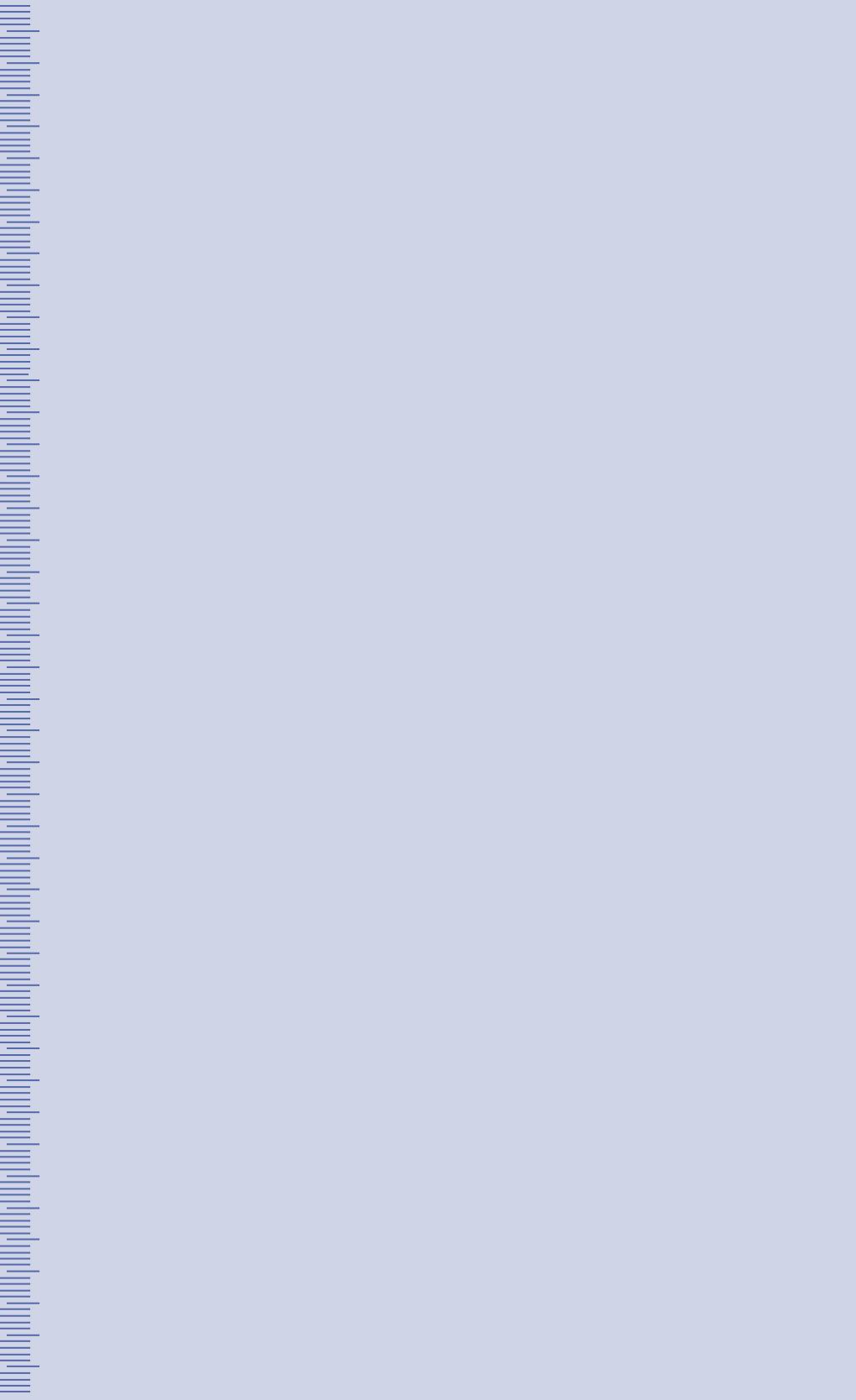
북한의 법제정비는 김정일시기에 더욱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물론 경제문제이다. 따라서 경제관련 법제의 정비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과를 위해 경제관련 법제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평양법률사무소 개설의 의도에서도 나타났듯이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인하는 법제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대외경제 관련 법제의 수정보충이 빈번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될 수 있다.

앞으로 경제적 안정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경제관련 법제의 정비는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대외경제 관련 법제는 대외관계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뿐만 아니라 하위법령들인 규정이나 준칙들의 제정과 수정보충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경제관련 법제정비에만 치중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의 변화를 외면하는 법은 살아있는 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민의 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법제에 대해서도 시의적절하게 정비해나갈 것으로 보이며, 법전 편찬사업도 전향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인민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가 사회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법인식이 전환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시리즈

0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03.12)
02.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2004.8)
03.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2005.2)
04. 한반도 평화정책과 유럽연합의 교훈 (2005.3)
05.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2005.7)
06. 남북관계발전의 법적 이해 (2005.6)
07.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2005.9)
08.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하였나? (2005.9)
09. 남북한 IT 용어 비교 (2005.9)
10.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2006. 3)
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2006.4)
12.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2006. 12)
13. 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2006. 12)
14. 북·중 경계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2006. 12)
15.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이야기 (2006. 12)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상 (2006. 12)
17.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종교교류 전망 (2006. 12)
18. 북한의 의료 실태 (2006. 12)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9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 인쇄일 2007년 12월 26일

• 발행일 2007년 12월 28일

•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142-715,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동)

전화 02)901-7163~7 / 팩스 02)901-708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 편집/인쇄처 광장인쇄(주) 전화 02)2277-3993

〈비 매 품〉



…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법제정비는
정책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법을 바라보는 인식도 보다 현실적 시각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